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구 현 우

목 차

제1장 개요	1
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1
1. 세입 결산	1
2. 세출 결산	4
1) 세출 총괄	4
2) 세출예산 전용내역	5
3) 세출예산 불용내역	6
4) 세출예산 이월내역	7
3. 예비비 지출	15
II. 재무제표	16
1. 재정상태표	16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17
3. 성질별 재정운영표	18
4. 순자산변동표	19
5. 현금흐름표	20

Ⅲ. 성과보고서 21

1. 성과체계 21
2.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

제2장 검토의견 25

1.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개선 25
2. 워크숍이나 간담회 시 임차료와 식음료비의 구분집행 필요 29
3.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절성 제고 필요 33
 - (1)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34
 - (2) 지출 절차 준수 필요 38
4. 대외활동 강화: CP 등급 조정 활성화 필요 41
5.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외부 위탁교육 과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46
6. 카르텔환경개선 등: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분할 집행 부적정 51
7.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56
8.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62
9.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및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필요 68
 - (1)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69
 - (2)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74

1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강화 필요 등	78
(1)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강화 필요	79
(2) 내역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88
(3)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전 기술·보안 검토 강화 필요	91
1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상담수당 예산운용의 적정성 제고 필요	98
1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홍보비의 집행절차 준수 필요	102
13.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UNCTAD 공무원 파견 관련 예산 편성 개선 필요	110
14. 지방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부 지방사무소 국내여비의 적 정 편성 필요	114
15. 한국소비자원 출연	122
(1) 연말 인건비 잔액의 과도한 사후 전용 지양 필요	124
(2) 기관 고유기능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추진 필요	130
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34
(1) 분쟁조정 처리량 증가에 대응한 신속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136
(2)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의 계획적 설정 및 산정기준 개선 필요	144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51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1. 세입 결산

□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5,394억 2,600만원으로, 8,262억 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3,779억 4,700만원이 수납되고, 4,482억 6,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70.1% 수준이며, 실질 징수결정액¹⁾ 대비 실질 수납률은 80.3%임.

〈2025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백만 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상	실질 ¹⁾			결산상	순수 ²⁾
합 계	539,426	826,208	470,539	377,947	-	448,261	92,592
재산수입	6	2	1	1	-	1	-
- 기타재산이자수입	6	2	1	1	-	1	-
경상이전수입	539,420	826,181	470,522	377,930	-	448,251	92,592
- 과 징 금	534,811	792,633	443,493	363,648	-	428,985	79,845
- 과 태 료	2,705	22,103	15,585	13,472	-	8,631	2,113
- 위 약 금	1	-	-	-	-	-	-
- 가 산 금	496	10,015	10,015	74	-	9,941	9,941
- 기타경상이전수입	1,407	1,426	1,426	733	-	693	693
- 징계부가금	-	4	3	3	-	1	-
잡수입	-	24	16	16	-	8	-
- 기타잡수입	-	24	16	16	-	8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결산상 징수결정액에서 당해연도 납부대상이 아닌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예액' 및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

2) 순수 미수납액(=임의 채납액)

□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과징금 수입이 3,636억 4,8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대부분(96.2%)을 차지하고 있음.

○ 과징금 수입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964억원),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814억원³⁾),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151억원),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150억원) 등에서 기인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121억원), 다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규정 위반행위(4억 8천만원) 등에서 기인함.

○ 그 외에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대부분 법원 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환수액(7억 3,300만원)이며, 가산금 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이자(7,400만원)에 해당함.

〈2025회계연도 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징금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기타	합계
363,648 (96.22)	13,472 (3.56)	733 (0.19)	74 (0.02)	20 (0.01)	377,947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전체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납기미도래액 등 당해연도 납부대상이 아닌 금액이 3,556억 6,900만원, 폐업 등에 따른 임의체납액이 925억 9,200만원임.

3) 6회 분납 건(1,628억 원) 중 2회차부터 4회차까지 2025년도에 납부(5회차 및 6회차 분 미도래)

○ 이 중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4,289억 8,5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5.7%에 해당이며, 당해연도 납부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액과 징수 유예액이 각각 1,615억 1,800만원, 1,876억 2,200만원이며, 임의체납액은 798억 4,500만원임.

○ 과태료의 경우 당해연도 납부대상이 아닌 납기미도래액이 65억 1,800만원, 임의체납액이 21억 1,300만원이고, 그 외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가산금 및 기타잡수입 등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106억 4,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입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과징금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납기미도래	161,518
	○ 징수유예(집행정지)	187,622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79,845
소 계		428,985
과태료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납기미도래	6,518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2,113
소 계		8,631
가 산 금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9,941
기타경상이전수입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693
기타재산이자수입	○ 납기미도래	1
기타잡수입	○ 납기미도래	8
징계부과금	○ 납기미도래	1
소 계		10,644
합 계		448,26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 결산

1) 세출 총괄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3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 7억 3,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9,875만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 1,642억 9,875만원 중 97.6%인 1,604억 2,562만원이 집행되고, 0.2%인 2억 9,945만원은 이월되고 2.2%인 35억 7,368만원은 불용되었음.
-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경비별로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의 34.4%인 561억 5,2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5.5%인 89억 3,500만원은 기본경비로, 60.2%인 982억 8,300만원은 사업비로 각각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경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감	전용 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C)	비율	
									B/A	C/A
합 계	163,370	199	730	723 △723	164,299	160,426	299	3,574	97.6	2.2
인건비	56,152	-	-	-	56,152	55,351	-	801	98.6	1.4
기본 경비	8,935	17	-	182 △182	8,952	8,525	7	420	95.2	4.7
사업비	98,283	182	730	541 △541	99,195	96,550	292	2,353	97.3	2.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 전용내역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7억 2,325만원으로 국·내외 여비 부족분 충당 및 행정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등에 따른 것임.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구 체 적 전 용 사 유	금 액
사업량 증가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288
	○ 행정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	158
	○ 자산취득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135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 부족분 충당	54
	○ 국제부담금 및 임차료 부족분 충당	47
	○ 연구용역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28
	○ 일반수용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8
	○ 직책수행경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5
합 계		72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세출예산 불용내역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35억 7,368만원으로 집행잔액에 해당함.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구체적 불용 사유	금 액
집행잔액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716
	○ 기타 집행잔액	2,857
합 계		3,57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세출예산 이월내역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액은 2억 9,945만원으로 구체적인 발생사유는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임.

〈2025년도 세출 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 예산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15,416	16,217	15,792	-	299	125	
일반회계	15,416	16,217	15,792	-	299	125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15,416	16,217	15,792	-	299	125	
016관(부문) 일반행정	15,416	16,217	15,792	-	299	125	
1200항(프로그램) 경쟁촉진	801	813	717	-	82	14	
1231세항(단위사업) 선진 경쟁정책 추진	289	317	261	-	49	7	
260목 연구용역비	289	317	261	-	49	7	26년까지 진행 하는 연구용역 잔금 이월
1241세항(단위사업) 카르텔대응강화	327	327	318	-	6	3	
210목 운영비	327	327	318	-	6	3	25년 자문계약 체결 관련 이월
1251세항(단위사업)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185	169	138	-	27	4	
260목 연구용역비	185	169	138	-	27	4	26년까지 진행 하는 연구용역 대금 이월
1400항(프로그램) 소비자후생증진	4,996	5,749	5,501	-	209	39	

구 분	세출 예산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1431세항(단위사업)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750	715	511	-	203	1	
260목 연구용역비	750	715	511	-	203	1	계약연장 및 조달수수료 이월
1451세항(단위사업)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4,246	5,034	4,990	-	6	38	
210목 운영비	4,246	5,034	4,990	-	6	38	26년 1월 1일 조달수수료 요청
7000항(프로그램) 공정거래 행정지원	9,618	9,654	9,573	-	8	73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3,753	3,632	3,563	-	7	61	
210목 운영비	3,753	3,632	3,563	-	7	61	12월 공공요금 요금 이월
7031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5,865	6,022	6,010	-	1	12	
210목 운영비	5,865	6,022	6,010	-	1	12	12월 공공요금 이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158,320	155,614	163,370	160,426	98.2	189,199
1200 경쟁촉진	20,824	18,480	21,732	19,653	90.4	24,119
1231 선진경쟁정책추진	2,203	1,746	1,947	1,820	93.5	3213
정책연구개발사업 (1231-310)	359	331	289	261	90.3	349
대외활동강화 (1231-311)	444	390	618	571	92.4	435
개도국기술지원 (1231-312)	63	69	79	77	97.5	56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1,336	956	961	911	94.8	2,373
1241 카르텔대응강화	357	373	842	818	97.1	1,495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357	373	842	818	97.1	1,495
1251 독과점시장환경개선	5,677	3,718	5,557	3,756	67.6	4,080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251-330)	3,695	1,738	3,470	1,711	49.3	2,074
사익편취행태개선 (1251-331)	360	356	402	363	90.3	321
기업집단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1251-332)	1,622	1,624	1,685	1,682	99.8	1,685
1261 시장구조개선	930	901	629	502	79.8	822
경쟁제한 규제개선 (1261-340)	930	901	629	502	79.8	822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1,657	11,742	12,757	12,757	100.0	14,5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271-350)	11,657	11,742	12,757	12,757	100.0	14,509

구 분	2023 결 산	2024 결 산	2025			2026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 개선	2,435	3,072	3,219	3,078	95.6	3,846
1331 대중소기업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435	3,072	3,219	3,078	95.6	3,846
대중소기업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1,461	2,094	1,718	1,631	94.9	2,69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974	978	1,501	1,447	96.4	1,150
1400 소비자후생증진	60,087	60,316	61,477	61,867	100.6	64,736
1431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159	1,337	1,792	1,589	88.7	1,304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431-600)	1,159	1,337	1,792	1,589	88.7	1,304
1441 소비자권익증진지원	2,748	1,172	1,234	1,152	93.4	1,221
소비자권익증진지원 (1441-610)	2,748	1,172	1,234	1,152	93.4	1,221
1451 소비자보호인프라운용	5,327	4,965	4,755	5,481	115.3	5,065
소비자상담 센터운영 (정보화) (1451-620)	3,561	3,592	3,527	4,279	121.3	3,877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운영(정보화) (1451-621)	1,766	1,373	1,228	1,202	97.9	1,188
1461 한국소비자원출연	50,853	52,842	53,696	53,646	99.9	57,146
한국소비자원출연 (1461-630)	50,853	52,842	53,696	53,646	99.9	57,146

구 분	2023 결 산	2024 결 산	2025			2026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륜 (B/A)	
7000 공정거래행정지원	74,974	73,745	76,942	75,827	98.6	96,498
7001 인건비	51,419	52,068	56,152	55,351	98.6	64,733
총액인건비성인건비 (7001-100)	51,419	52,068	56,152	55,351	98.6	64,733
7011 기본경비	9,341	8,441	8,935	8,524	95.4	11,729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3,082	2,931	3,316	3,106	93.7	3,636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1)	66	66	74	71	95.9	74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2)	34	34	51	41	80.4	46
경쟁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3)	19	20	26	27	103.8	26
조사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0	15	20	19	95.0	20
소비자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5)	18	17	20	19	95.0	22
시장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6)	26	20	20	22	110.0	20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7)	72	75	85	77	90.6	90
기업협력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8)	20	15	23	19	82.6	23

구 분	2023 결 산	2024 결 산	2025			2026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9)	268	290	281	303	107.8	299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0)	111	111	92	124	134.8	118
광주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1)	74	77	70	78	111.4	82
대전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2)	66	70	59	72	122.0	73
대구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3)	65	68	56	70	125.0	72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4)	62	58	60	63	105.0	63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5)	27	32	27	33	122.2	29
경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6)	-	-	-	-	-	154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0)	1,827	1,455	1,346	1,123	83.4	1,819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1)	438	549	325	326	100.3	388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2)	541	652	716	710	99.2	853

구 분	2023 결 산	2024 결 산	2025			2026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륜 (B/A)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3)	408	377	376	372	98.9	374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4)	70	187	198	191	96.5	20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5)	143	123	145	149	102.8	145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6)	84	108	119	111	93.3	133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7)	102	111	138	136	98.6	165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8)	98	88	80	78	97.5	93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9)	686	195	231	231	100.0	202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0)	484	228	211	213	100.9	574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1)	71	96	348	343	98.6	78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2)	77	72	87	91	104.6	89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3)	75	80	81	78	96.3	81

구 분	2023 결 산	2024 결 산	2025			2026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4)	117	95	136	90	66.2	163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5)	101	127	118	138	116.9	133
경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5)	-	-	-	-	-	1,392
7031 행정지원	6,380	6,674	7,109	7,041	99.0	8,774
공정거래지원 (7031-300)	811	1,298	1,157	1,137	98.3	1,248
행정소송수행 (7031-301)	3,278	3,248	3,886	3,889	100.1	3,888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7031-302)	2,291	2,129	2,066	2,015	97.5	3,638
7032 공정위 정보화	7,833	6,562	4,746	4,910	103.5	11,262
정보화기반확충(정보화) (7032-501)	2,658	3,239	3,259	3,419	104.9	2,833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3)	5,175	3,323	1,487	1,491	100.3	1,587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4)	-	-	-	-	-	6,8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억 3,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이는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가 2024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수당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	730	73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당기 자산은 전기 대비 약 34.3% (△993억 원) 감소한 1,901억 원으로, 이는 주로 미수채권 등 금융자산 감소(△955억 원), 감가상각으로 인한 유·무형 자산 감소(△41억 원) 등에 기인함
- 부채는 전기 대비 3.1%(5억 원) 증가한 157억원으로, 이는 주로 금융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해 차입부채 감소(△5억) 및 소송충당부채 증가(9억) 등에 기인함

〈2025년도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증 감 율
자 산	190,082	289,413	△99,331	△34.3%
부 채	15,685	15,218	467	3.1%
순자산	174,398	274,195	△99,797	△3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 당기 재정운영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약 2.9%(24억 원) 증가한 846억원인데, 이는 주로 일반사업출연비 증가(18억 원) 등에 기인함
- 관리운영비는 전기 대비 7.0%(57억 원) 증가한 880억 원으로, 이는 주로 지급단가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34억 원), 운영비 증가(9억 원) 등에 기인함
-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97.6%(△1,788억 원) 감소한 44억 원으로, 이는 주로 기타국가운영비용인 대손상각비 감소(△1,737억 원) 등에 기인함
-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2,621.2%(337억 원) 증가한 350억 원으로, 이는 주로 기타국가운영수익인 대손충당금 환입 증가(342억 원) 등에 기인함

〈2025년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프로그램순원가	84,601	82,183	2,418	2.9%
II. 관리운영비	87,961	82,216	5,745	7.0%
III. 비배분비용	4,353	183,144	△178,791	△97.6%
IV. 비배분수익	34,968	1,285	33,683	2,621.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41,947	346,258	△204,311	△59.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1,947	346,258	△204,311	△5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성질별 재정운영표

- 당기 성질별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약 59.0%(△2,043억 원) 감소한 1,419억 원으로, 이는 주로 대손충당금환입 증가 등 기타 국가운영수익 증가(337억 원), 출연사업비 등 이전비용 증가(17억 원), 대손상각비 감소 등 국가운영비용 감소(△1,723억 원) 등에 기인함

〈2025년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수익합계(a)	34,968	1,285	33,683	2,621.2%
I.이전수익	-	-	-	-
II.국가운영수익	34,968	1,285	33,683	2,621.2%
비용합계(b)	176,915	347,543	△170,628	△49.1%
III.이전비용	68,124	66,436	1,688	2.5%
IV.국가운영비용	108,791	281,107	△172,316	△61.3%
재정운영결과(b-a)	141,947	346,258	△204,311	△5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순자산변동표

□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36.4%(△998억 원) 감소한 1,744억 원으로, 이는 기초순자산 2,742억 원, 순자산변동표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 1,419억 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2억 원 등으로 구성됨

〈2025년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기초순자산	274,195	153,295	120,900	78.9%
II. 재정운영결과	141,947	346,258	△204,311	△59.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183	467,191	△425,008	△91.0%
IV. 조정항목	△33	△33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74,398	274,195	△99,797	△3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현금흐름표

- 2025회계연도 중에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역(16억 원)은 주로 부담금 제재금 수입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5,375억 원), 제재금 수입금의 국고이전지출 등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5,359억 원)에서 발생함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역(△11억 원)은 주로 관사 임차보증금의 반납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6억 원), 일반유형자산 취득 등 현금유출 (△16억 원)에서 발생함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역(△5억 원)은 주로 관사임차보증금 지급 등 현금유출 (△5억 원)에서 발생함

〈2025년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3	-	1,613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74	-	△1,074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9	-	△539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	-	-	-
V. 기초의현금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Ⅲ.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공정거래위원회 임무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며, 비전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3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체계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3	4	12	10	2	-
비율(%)	100%	100%	100%	83.3%	16.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성 과 목 표	단 위 사 업	분 야
---------	---------	-----

전략목표Ⅰ :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한다.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일반재정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일반재정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일반재정
	(4) 카르텔대응강화	일반재정
	(5) 시장구조개선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1) 행정지원	일반재정
	(2) 공정위 정보화	정 보 화

전략목표Ⅱ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 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일반재정
--	---------------------------------	------

전략목표Ⅲ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일반재정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일반재정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정 보 화
	(4) 한국소비자원 출연	일반재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2025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는 4개 프로그램 목표에 총 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달성은 3개, 미달성은 2개임.⁴⁾

〈성과목표별 달성 현황〉

구 분	2024 달성	2025 달성	2025결산 (억원)
전략목표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Ⅰ-1)			196
·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건 처리율(단위:%)	X	X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Ⅰ-2)			99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단위:%)	○	○	
·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신규	○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Ⅱ-1)			31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단위:점)	X	X	-
전략목표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Ⅲ-1)			618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단위:%)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미달성 2개 지표의 달성률은 각각 96.2%, 93.6%로 100% 달성에 이르지 못함

□ 단위사업별로는 전체 1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달성률은 각각 96.2%, 102.3%, 106.5%, 93.6%, 104.5%로 나타남.

〈단위사업별 달성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4년	'25년
전략목표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①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결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처리사건/접수사건) *100	목표	80.74	78.94
				실적	77.50	75.92
				달성률	96.0%	96.2%
프로그램목표Ⅰ-2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결과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50%)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성과 달성도(50%) 2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목표	91.3	92.5
				실적	92.0	94.6
				달성률	100.8%	102.3%
	③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결과	최근 5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의 전부승소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 수	목표	신규	75.3
				실적	76.0	80.2
				달성률	-	106.5%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④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점)	결과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 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 30%)	목표	68.8	69.2
				실적	68.2	64.8
				달성률	99.1%	93.6%
전략목표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Ⅲ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⑤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결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	목표	29.6	30.8
				실적	29.9	32.2
				달성률	101.0%	104.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검토의견

1.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개선

□ 「국가재정법」 제98조⁵⁾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⁶⁾은 내부통제의 방법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두면서 심의회는 위원장(사무처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으로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되,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⁷⁾

5)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6)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제3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구성〉

소속	직위	비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장(1인)
	기획조정관	내부위원(11인)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심판관리관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서울대학교	교수	외부위원(2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재정법」과 훈령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훈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은

-
-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인건비, 법정경비
 -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것으로 보임.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총예산 1,633억 7,0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지원(7000)' 프로그램의 예산은 약 769억 4,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47.1%에 불과한바, 기관 예산의 대부분이 심의 제외 대상인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에만 총 65건의 전용을 승인받아 국회에 통보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전용과 같이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대상에 속함.

- 둘째, 「국가재정법」이 예산집행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훈령상 심의 제외 규정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근거로 장기간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예정한 내부통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예산집행심의회는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주요 재정집행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실제 심의안건이 많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예산집행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예산집행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제외 대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운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워크숍이나 간담회 시 임차료와 식음료비의 구분집행 필요

□ 임차료(210-07)는 ①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②장소·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③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④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⑤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⑥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집행을 위한 경비를 말함.⁸⁾

〈공정거래위원회 부서별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실·국명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운영지원과	178	-	80	-	258	256	-	3
심판관리관실	13	-	4	-	17	17	-	-
기획조정관실	611	-	27	-	638	638	-	-
경쟁정책국	106	-	13	-	119	119	-	-
기업협력정책관실	27	-	△7	-	20	13	-	7
소비자정책국	57	-	△7	-	50	45	-	5
시장감시국	7	-	-	-	7	7	-	-
카르텔조사국	7	-	-	-	7	4	-	3
기업집단감시국	39	-	8	-	47	47	-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	-	10	-	10	10	-	-
서울사무소	13	-	-	-	13	13	-	-
부산사무소	21	-	△1	-	20	20	-	-
광주사무소	5	-	△1	-	4	4	-	-
대전사무소	15	-	2	-	17	17	-	-
대구사무소	15	-	△2	-	13	13	-	-
합계	1,114	-	126	-	1,240	1,222	-	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68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임차료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2억 4,000만원이고, 이 중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가예산은 사업의 성격과 집행 목적에 따라 목과 세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집행 단계에서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행정기관은 각 세목의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성격의 경비를 특정 세목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임차료 집행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구(舊)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차료는 장소·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세목이고, 회의·간담회·워크숍 등에서 발생하는 식사비는 사업추진비(240-01) 또는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부서별 워크숍, 초청연수, 간담회 및 설명회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장소 임차와 식사(다과)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사업추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료만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예를 들어, ‘공정거래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부서별 워크숍 예산으로 약 6,400만원을 전액 임차료로만 집행하였는데, 이들 임차료에는 장소 사용료뿐 아니라 식사비까지 포함되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됨.

〈사업추진비 집행이 없는 임차료 집행〉

(단위: 천원)

세부사업	행사	집행액
공정거래지원	부서별 워크숍	63,589
대외활동 강화	2030 자문회 성과발표회	2,695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025년 하도급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TF	1,402
	하도급 관련 간담회	55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및 공시제도 설명회	2,860
	하도급법령 제도 개선 간담회	385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필수품목 제도 개선 찾아가는 현장 홍보	704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간담회	1,925
합계		74,1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식사비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세목의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고,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⁹⁾과도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식사비를 임차료를 통하여 사실상 집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추진비의

9)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자율적인 증액을 제한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집행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 세목별 집행 내역만으로는 실제 경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져, 세목을 구분하여 편성한 취지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여 워크숍 등 행사에서 임차료를 통해 집행하던 식사비를 분리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향후 워크숍, 간담회 등 식사가 포함된 기관 행사 관련 예산은 구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할 때에도 장소 임차료와 식사비는 계약 및 증빙 단계에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절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 경비, 각 개별 사업비,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총 5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1,642억 9,900만원 중 1,60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7,4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경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감	전용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63,370	199	730	723 △723	164,299	160,426	299	3,574
인건비	56,152	-	-	-	56,152	55,351	-	801
기본경비	8,935	17	-	182 △182	8,952	8,525	7	420
사업비	98,283	182	730	541 △541	99,195	96,550	292	2,35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르면,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일반적인 지출 절차에 따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 (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함)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월 예산 과목별로 정하여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함.¹⁰⁾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 또는 비목으로 우선 처리한 후 실제 집행과목으로 정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10)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예를 들어, 심판관리관실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우선 집행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과목정정 기능을 통해 실제 집행과목인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특근매식비’로 정정하였음.

〈예산 집행 시 과목정정 내역〉

(단위: 천원)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3,699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5,794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기타운영비 (210-16)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1,924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357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2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내여비 (22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7,173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1,925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2,83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내여비 (22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1,706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일반수용비 (210-0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일반수용비 (210-01)	3,48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국내여비 (220-0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국내여비 (220-01)	2,507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국내여비 (220-0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국내여비 (220-01)	6,26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일반수용비 (210-01)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5)	특근매식비 (210-05)	153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431-600)	국내여비 (220-01)	254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431-600)	사업추진비 (240-01)	147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1451-621)	사업추진비 (240-01)	95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26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431-600)	임차료 (210-07)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국외업무여비 (220-02)	5,15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851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4)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4)	특근매식비 (210-05)	2,6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과목정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당초에 지출 요청한 과목을
정정하는 절차로, 이체가 완료된 건이라도 정정이 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부받은 금액이 부족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관서운영경비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사후적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은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후적인 과목정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지출 절차 준수 필요

□ 「국고금 관리법」 제19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지출원인행위는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함.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지출원인행위부를 살펴보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2025년 3월 디지털포렌식 센터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2월 24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4월 17일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였음.

11)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이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 한 사례〉

(단위: 천원)

내역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기재 일자	금액
		시작일	종료일		
기업규모별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정책연구 공동 용역	2024. 10. 14.	2024. 10. 14.	7. 13.	11. 26.	40,000
2025년 3월 디지털포렌식 센터 유지보수 사업	2. 24.	3. 1.	3. 31.	4. 17.	14,000
2025년 공정거래백서 발간	3. 1.	3. 1.	3. 22.	3. 25.	15,950
감사담당관 조사실 벽체 방음공사	4. 8.	4. 7.	4. 9.	4. 10.	670
보안관제센터 이전 구축 사업(소방)	4. 10.	4. 7.	4. 9.	4. 10.	400
보안관제센터 이전 구축 사업(이사 및 환경개선)	6. 2.	5. 19.	5. 30.	6. 2.	4,820
사건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9. 8.	9. 3.	9. 30.	10. 13.	7,500
사무환경 개선 공사	9. 18.	9. 18.	9. 25.	10. 13.	23,100
업무지원팀 및 지하상황실 보안설비 공사	9. 18.	9. 18.	9. 25.	10. 13.	2,930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행사 위탁	9. 26.	9. 19.	9. 26.	10. 15.	8,000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컨퍼런스	10. 16.	10. 15.	10. 16.	10. 20.	12,000
2025년도 공정위-아시아경쟁연합 공동 학술심포지엄	10. 31.	10. 31.	10. 31.	11. 12.	9,400
중점조사팀 배치 관련 카르텔조사국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11. 19.	11. 19.	11. 21.	11. 24.	1,141
공정위-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행사 위탁	12. 8.	12. 8.	12. 19.	12. 30.	8,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지출원인행위는 계약 등에 따라 지출할 예산을 확정하여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바, 관련 절차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집행 가능액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¹²⁾

12)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도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된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음.¹³⁾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 관리법」 제19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계약 체결 시 지출원인행위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 기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3) 정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4. 대외활동 강화¹⁴⁾: CP 등급 조정 활성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외활동 강화”는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5 회계연도에 예산현액 5억 7,300만원 중 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함.

〈2025 회계연도 대외활동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아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외활동 강화	618	618	-	△45	-	573	571	-	2	435
경쟁관 해외 파견	86	86	-	13	-	99	98	-	1	21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 정보 번역	46	46	-	-	-	46	46	-	-	48
CP제도 운영	41	41	-	-	-	41	41	-	-	46
서울국제경쟁포럼	207	207	-	18	-	225	225	-	-	-
ICN 부담금	4	4	-	1	-	5	5	-	-	4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25	25	-	△3	-	22	22	-	-	73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80	80	-	-	-	80	80	-	-	114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	62	62	-	△61	-	1	1	-	-	62
2030 청년자문단	67	67	-	△13	-	54	53	-	-	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4) 세부사업: 대외활동 강화(1231-311)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의 확산을 위해 ‘CP제도 운영’을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두고 있음.

○ 2025 회계연도 ‘CP제도 운영’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4,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¹⁵⁾는 경쟁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 중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

15)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¹⁶⁾에 따라 CP 등급평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총 615개이고,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190개 기업에 달하는 등 신청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임.

〈CP 등급평가 신청기관〉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신청기업(개)	10	16	28	58	78	1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CP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AAA, AA, A로 구분되는데, AA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은 과징금 및 시정조치 감경, 일정 기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음.¹⁷⁾
- 반대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¹⁸⁾에서는 CP 등급을 받은 기업이 등급 유효기간(2년) 내에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6)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7) CP 등급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은 기업의 악용 우려에 따라 2014년에 폐지되었다가 2023년 법 개정으로 재도입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재도입 이래 감경사례는 없음.

18) 제15조(평가등급의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준에 부여 받은 평가등급을 하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율준수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CP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의 법령 위반 사례〉

등급평가 연도	기업명	평가등급	위반행위	행정처분
2022	(주)포스코케미칼	A	거래상 지위남용	시정명령
			부당한 경영간섭	과징금·시정명령
	유비벨록스(주)	A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시정명령
2023	한화시스템(주)	AA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시정명령
2024	(주)포스코이앤씨	AAA	기업결합 신고규정위반	과태료
	한화시스템(주)	AA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
	디엘이앤씨(주)	AA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과태료
2025	네이버	AA	허위과장표시광고	시정명령
	(주)아모레퍼시픽	A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과태료
	씨제이대한통운(주)	A	부당한 자금지원	과징금·시정명령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 그러나 2022년부터 현재¹⁹⁾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기업 중 평가등급이 하향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예컨대, 씨제이대한통운(주)이 부당한 지원행위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자율준수평가 제도의 신뢰를

19) 등급하향의 근거규정이 시행된 것은 2025년 4월부터로 이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는 (주)아모레퍼시픽과 씨제이대한통운(주) 사례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급을 유지하였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 부여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담보하는 신호(signal)로서 기능하여야 함.
- 따라서 CP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자율준수 시스템의 법 위반 예방 및 탐지 기능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등급 유효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반복·고의 여부, 조사방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 재심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시할 필요가 있음.

5.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²⁰⁾: 외부 위탁교육 과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은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복구·분석용 프로그램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SW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구매,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장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포렌식조사관의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9억 6,100만원 중 9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961	961	-	-	-	961	911	-	50	2,373
장비확충	758	758	-	-	-	758	758	-	-	1,933
유지보수	173	173	-	-	-	173	132	-	41	241
포렌식 교육	30	30	-	-	-	30	21	-	9	42
포렌식지원여비	-	-	-	-	-	-	-	-	-	1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포렌식 교육” 사업은 포렌식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 세부사업: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132만원을 집행하고 868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포렌식 교육 예산 집행 현황〉

내역	예산액	집행액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일반수용비, 210-01)	1,600만원	1,584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일반수용비, 210-01)	1,400만원	548만원
합계	3,000만원	2,132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 중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선발된 1명에게 2년간 매년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외부기관 위탁교육 개요〉

- (훈련기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계약학과로 수리정보과학과 설치,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학위 과정 운영 중
- (훈련기간) 2년간 야간 교육과정으로 운영
 - 금요일(저녁) 및 토요일(전일)을 이용하여 수업 진행
 - 정규 4학기(각 6학점), 계절학기 2학기(각 3학점) 동안 필수과목 이수 필요(총 29학점 이수)
- (신청요건) 위원회 3년 이상(실근무기간) 근무한 4~9급 경력직 공무원, 만 53세 이하,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 어학요건
- (선발절차) 추천서 등 제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최종 1명 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명의 위탁교육대상자 추천
- (훈련 후 보직) 교육이수 후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
- (등록금) 정규학기 800만 원, 계절학기 350만 원
 - (공정위 예산지원) 정규학기 560만 원, 계절학기 280만 원
 - (교육생 개인부담) 정규학기 240만 원, 계절학기 70만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2025년에는 위탁교육 지원자가 없어 교육생이 선발되지 못하였고²¹⁾,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석사과정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일부를 학술대회 참가비로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포렌식 교육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2025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5년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5,84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DFRWS USA 2025 참가비 지급	965
			DFRWS APAC 2025 참가비 지급	4,173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비 지급	340
2024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4년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3,980
			DFRWS APAC 2024 참가비 지급	1,734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 참석	48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4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4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4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3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3년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4,42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3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3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2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2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5,36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2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2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1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1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5,048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1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1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1) 2025년 신규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2024년에 3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무와 학업(매주 금, 토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과 예산지원 외에도 본인이 2년간 1,1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지원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함.

□ 기업의 업무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 및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조사 및 포렌식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디지털포렌식 교육 현황〉

부문	목적	내용	
① 디지털조사, 포렌식업무 역량 강화	사건 담당자와 포렌식 조사관 등의 디지털 조사능력을 향상하여 진화하는 안티포렌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자체교육	(대상) 사건 담당자 (교육) 디지털 매체 조사방법 등
		위탁교육	(대상) 사건 담당자 (교육) 자체 포렌식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	(대상) 포렌식 담당자 (교육) 디지털 자료 수집·복구 분석 능력 향상
		포렌식 세미나	(대상) 포렌식 담당자 (교육) 타 기관과 교류 및 협력
② 윤리·보안 교육	포렌식 조사의 신뢰 제고 및 보안 사고 예방	윤리 및 보안교육	(대상) 포렌식 담당자 (교육) 행동강령 및 조사보안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현행 석사과정 지원 방식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25년도에는 교육생이 선발되지 않아 당초 계획한 석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의 일부가 학술대회 참가비로 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수년간 지원자 수, 이수자의 성과, 업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외부기관 위탁교육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카르텔환경개선 등²²⁾: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분할 집행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카르텔환경개선” 세부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 82억 2,400만원 중 62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19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카르텔환경개선 등 7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르텔환경개선	842	842	-	-	-	842	818	6	18	1,495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470	3,470	-	46	-	3,516	1,711	-	1,805	2,074
사익편취 행태개선	402	402	12	△20	-	394	363	27	4	32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718	1,718	-	-	-	1,718	1,631	-	87	2,69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501	1,501	-	-	-	1,501	1,447	-	54	1,150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9	119	1	△6	-	114	111	-	3	133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8	118	1	20	-	139	138	-	1	1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2) 세부사업: 카르텔 환경개선(1241-32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사익편취 행태개선(125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40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6),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2) 검토의견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²³⁾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인 경비임.²⁴⁾

23)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⑥ (생략)

2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4. (생략)

□ 그런데, 2025년 심사보고서 인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대금을 건당 5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심사보고서 인쇄비 분할 집행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내역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2입담2043 등),	2025-02-24	702,100*	문중인쇄
	첨부자료 I, II	2025-02-24	4,406,6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3제카1409),	2025-04-01	4,904,900	문중인쇄
	첨부자료 I, II			
	첨부자료 III, IV, V	2025-04-01	4,862,000	
	첨부자료 VI, VII, VIII	2025-04-01	4,504,500	
	첨부자료 IX, X, XI	2025-04-01	4,922,500	
	첨부자료 XII	2025-04-11	2,375,4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2민수1584 등)	2025-04-23	1,278,100*	문중인쇄
	첨부자료 I, II, III	2025-04-23	4,985,2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3카총0733)	2025-05-27	3,865,4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5-27	3,033,800	
	첨부자료	2025-05-27	3,619,0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3카총0733)	2025-09-19	3,877,5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9-19	3,040,400	
	첨부자료	2025-09-19	4,302,100	
	첨부자료	2025-09-19	3,716,9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5제카2022 등),	2025-10-14	3,339,600	문중인쇄
	첨부자료 I, II			
	첨부자료 III, IV, V	2025-10-14	3,865,40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심사보고서(시지남용)	2025-12-01	2,590,5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12-01	3,946,80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 (생략)

② (생략)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④ (생략)

세부사업명	내역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심사보고서(2023지원0015), 첨부자료 I, II	2025-04-30	4,906,000	삼일기획
	첨부자료 III	2025-04-30	2,530,000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심사보고서(2023지원1770), 첨부자료 I	2025-05-14	4,587,000	삼일기획
	첨부자료 II, III	2025-05-14	4,763,000	
	첨부자료 IV	2025-05-14	2,354,000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심사보고서(2022내부2039), 첨부자료 I, II, III	2025-10-13	4,950,000	삼일기획
	첨부자료 IV, V	2025-10-13	3,520,0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심사보고서(2022기감1740), 첨부자료 I, II, III	2025-04-10	4,180,000	삼일기획
	첨부자료 IV, V	2025-04-10	2,695,0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심사보고서(2023하조1401)	2025-10-13	3,379,2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10-15	3,480,40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심사보고서(2025국결1566)	2025-09-01	3,540,9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9-01	4,996,200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6)	심사보고서(전상법)	2025-04-30	3,355,000	문중인쇄
	심사보고서 별지	2025-04-30	2,675,20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심사보고서(2025국결0217), 첨부자료 I	2025-02-19	2,350,700	문중인쇄
	첨부자료 II, III	2025-04-10	4,420,900	
	첨부자료 IV, V	2025-04-10	4,327,40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심사보고서(2025기결0985)	2025-06-04	3,934,7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6-11	3,287,90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심사보고서(2025기결1310 등)	2025-12-30	2,506,9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12-30	2,700,500	

* 다른 사건 보고서와 함께 인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부가세 제외 금액에 10%를 가산한 후 백원 미만은 절사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인쇄를 요청한 날짜가 달랐거나 인쇄업체가 물품을 순차적으로 납품함에 따라 대금 청구일자가 달라졌으며, 첨부자료는 권당 1,000~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분권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인쇄 대상 자료의 구성 및 제작 단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건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하지만,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동일한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함께 제작되는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인쇄 요청일이나 납품일 등이 다르거나 첨부자료를 분권하여 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각각 별개의 지출원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쇄비가 각각 건당 500만원 이하로 집행되었으나 이를 합산하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서운영경비 지급 한도를 고려하여 분할 집행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자료의 인쇄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²⁵⁾: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 및 신산업 분야인 온라인 플랫폼 등 ICT 분야에 대한 상시·체계적 감시를 통해 거래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5억 1,600만원 중 17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470	3,470	-	46	-	3,516	1,711	-	1,805	2,074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129	129	-	69	-	198	197	-	1	190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3,200	3,200	-	-	-	3,200	1,397	-	1,803	1,751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141	141	-	△23	-	118	117	-	1	1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 세부사업: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2) 검토의견

-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14가지 행위 유형〉

①부당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부당지원행위, ⑤부당고객유인행위, ⑥사원판매행위, ⑦미등록다단계, ⑧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하도급법 위반행위, ⑪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대리점법 위반행위, ⑭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신고포상금은 34건에 대하여 총 13억 4,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31억 5,000만원의 42.7%에 불과함.
-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것임.

〈2025회계연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예산 집행 현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비(일반수용비, 210-01)	5,000만원	5,000만원
신고포상금(포상금, 310-03)	31억 5,000만원	13억 4,700만원
합계	32억원	13억 9,7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건수,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 실적(합계)	지급건수	31	43	67	37	34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347,069
	예산액	2,130,000	3,130,000	3,350,000	3,000,000	3,150,000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건수	6	9	17	14	8
	지급액	2,186,000	2,486,220	3,214,290	897,757	1,288,51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지급건수	4	3	17	5	3
	지급액	7,200	892	75,385	2,550	5,130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지급건수	2	2	2	-	-
	지급액	650	300	300	-	-
부당한 지원행위	지급건수	2	2	-	1	-
	지급액	148,300	573,700	-	470,450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지급건수	1	1	2	-	4
	지급액	400	6,120	20,270	-	6,500
사원판매행위	지급건수	-	-	2	-	1
	지급액	-	-	1,900	-	400
미등록다단계	지급건수	1	-	1	-	1
	지급액	1,000	-	250	-	300
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1,50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1	1	-
	지급액	-	51,955	31,760	17,238	-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4,000
총수입가 사익편취행위	지급건수	-	-	-	-	-
	지급액	-	-	-	-	-
가맹거래법	지급건수	15	24	22	13	14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위반행위	지급액	9,950	38,295	7,600	24,300	39,974
대리점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3	2	1
	지급액	-	500	9,760	700	750
기업집단지정자료	지급건수	-	-	-	1	-
제출의무위반행위	지급액	-	-	-	1,6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예산은 매년 초에 차년도 포상금 지급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과 과징금액 등 처분의 결과를 편성 시점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2024년·2025년의 경우에는 2023년 이전 대비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었으며, 그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도 적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사건의 과징금 액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 실적	포상금 건수	31	43	67	37	34
	포상금 지급액	2,354	3,158	3,362	1,415	1,347
	과징금 액수	295,705	149,023	321,120	46,047	59,49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²⁶⁾,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하였음²⁷⁾.

26)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공정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 6. 17.)

□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제 신고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기간 SNS 등을 활용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해왔음.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현황〉

연도	홍보시기	홍보수단
2022	11.15.~12.20.	블라인드 앱 배너 광고, 경기도 버스 동영상 광고
2023	11.1.~12.5.	블라인드 앱 배너 광고, 페이스북 배너광고, 지하철 내 액자 광고
2024	12.1.~12.31.	포스터·리플릿 배포, 배너광고·인포그래픽 영상의 블라인드 앱, 유튜브 등 매체별 광고 집행
2025	6.27.~7.25. 8.25.~9.24.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 내 신고포상금 홍보 동영상 게시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매체별 광고 집행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신고포상금 예산이 2년 연속 절반 이상 불용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홍보 방식이 신고 활성화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관련자의 신고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고,

27) 기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2026년 8월 11일 시행).

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추진된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홍보 수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홍보 수단·매체·시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²⁸⁾: 사업 비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17억 1,800만원 중 16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1,718	1,718	-	-	-	1,718	1,632	-	86	2,696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551	1,551	-	-	-	1,547	1,493	-	54	2,5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62	62				66	34	-	32	62
공시위탁운영	105	105				105	105	-	-	1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8) 세부사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에서는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6,000만원 중 5,347만원을 집행하였음²⁹⁾.

○ 공정위는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기술자료 비밀 컨설팅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현액	계약 금액	집행액	계약방식	계약자	계약기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6,000	56,100	53,466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공정 거래 조정원	2025. 4. 30. - 12. 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입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원가계산서에 노트북 구입비를 반영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로 노트북 1대를 구입하였음.

29)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과 5,61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실제 소요된 5,347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원가계산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일반 수용비	인쇄비	5,800	9,731
	소모품 구입	600	239
	강사비(컨설팅 비용)	10,200	9,710
	교육 동영상 제작	2,000	3,960
	홍보웹툰 제작	1,000	-
	전문가 자문비	9,000	5,500
	소계	28,600	29,140
여비	현장 교육 여비	2,600	2,182
	유관기관 협의 출장	1,120	
	소계	3,720	2,182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2,000	1,849
	소계	2,000	1,849
인건비	책임연구원	3,816	3,816
	연구위원	7,628	7,628
	소계	11,444	11,444
업무추진비	기술관리 실태 관련 간담회	2,400	1,814
	유관기관 협의	1,200	
	사전교육 및 회의	450	751
	소계	4,050	2,565
일반관리비		1,186	1,186
소 계		51,000	48,366
부가가치세		5,100	5,100
총 계		56,100	53,46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 자료 재구성)

□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당 노트북을 자체 자산으로 등록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부 규정인 「물품관리규칙」³⁰⁾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의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였고, 사업 종료 후인 2026년 현재에도 공정거래종합지원팀의 온라인 교육 업무에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제출하였음.

○ 최근 4년간 동일 사업에서 조정원은 2022년 노트북 3대, 2025년 노트북 1대를 사업비로 취득하여 4대 모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비밀보호 컨설팅사업에서 취득한 자산 현황〉

(단위: 원)

연도	품목	금액	자산등재 및 보유 여부
2022	노트북(3대)	2,994,000	○
2025	노트북(1대)	1,849,000	○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트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계약 종료 후 해당 자산의 귀속 여부나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한 동 기관의 내부 규정

-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용역계약에서 취득한 자산은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자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종료 시 계약목적 달성 여부와 향후 활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귀속, 계약상대자의 계속 사용 또는 처분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본 사업에서는 수탁기관이 사업비로 취득한 노트북을 계약 종료 후에도 자체 자산으로 계속 보유·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의 귀속 주체를 확인하거나 계약 종료에 따른 인계·반납 또는 계속 사용 승인 여부 등에 대해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이 불명확해지고, 동일한 사업이 반복될 경우 사업 종료 시마다 취득자산이 별도의 검증 없이 수탁기관의 자산으로 계속 축적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동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 종료 시 자산 귀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수행기관이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차기 사업자의 장비 확보 부담이나 입찰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최근 4년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 방식	계약자	계약금액	노트북 취득 여부
2022	수익계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8	O
2023	수익계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9	X
2024	경쟁입찰	한국생산성본부	50	X
2025	경쟁입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6	O

(단위: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기준과 관리절차를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종료 시 취득자산의 귀속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수탁기관의 일반 자산으로 사실상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³¹⁾: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및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을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5억 100만원 중 14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501	1,501	-	-	-	1,501	1,447	-	54	1,150
가맹·유통·대 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1,192	1,192	-	-	-	1,192	1,170	-	23	895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5	305	-	-	-	305	275	-	30	255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	4	4	-	-	-	4	4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1) 세부사업: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2) 검토의견

(1)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가맹·유통·대리점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실태와 거래관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내역사업과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내역사업에 총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4억 1,985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가맹·유통·대리점 서면실태조사 예산 집행 현황>

내역사업명	내역	예산액	집행액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거래행태 개선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7,500만원	7,200만원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7,500만원	7,335만원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대리점분야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3억 500만원	2억 7,450만원
합 계		4억 5,500만원	4억 1,985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5년 서면실태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는 응답률이 100%인 반면, 가맹점·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이하 “납품업체”라 함)·대리점의 응답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 가맹분야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맹점의 응답률은 38.8%임.
- 유통분야는 7,600개 납품업체 중 37.7%가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였으며, 21개 업종 510개 본사와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분야의 응답률은 35.6%임.

〈2025년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대상 및 응답 업체 현황〉

연 도		대상업체 수	응답업체 수
가맹	가맹본부	200개	200개(100.0%)
	가맹점	12,000개	4,661개(38.8%)
유통	납품업체	7,600개	2,868개(37.7%)
대리점	본사	510개	510개(100.0%)
	대리점	50,000개	17,823개(3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는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있고 미응답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반면³²⁾, 가맹점·납품업체·대리점은 과태료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응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등의 미응답 사유에 대해서 실태조사 참여가 법적 의무가 아닌 점, 영세사업자는 조사 응답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 설문 문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³³⁾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맹점·납품업체·대리점의 응답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응답률은 각각 38.8%, 37.7%, 35.6%로, 2021년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응답업체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태 조사 응답 업체 수	가맹	가맹본부	200개 (100.0%)	200개 (100.0%)	200개 (100.0%)	200개 (100.0%)	200개 (100.0%)
		가맹점	3,180개 (26.5%)	2,830개 (23.6%)	4,421개 (36.8%)	4,567개 (38.1%)	4,661개 (38.8%)
	유통	납품업체	1,497개 (21.4%)	1,517개 (21.7%)	2,333개 (33.3%)	2,762개 (36.3%)	2,868개 (37.7%)
	대리점	본사	153개 (100.0%)	546개 (100.0%)	552개 (100.0%)	519개 (100.0%)	510개 (100.0%)
		대리점	3,705개 (33.3%)	19,252개 (38.5%)	20,078개 (39.9%)	18,214개 (36.4%)	17,823개 (3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3) ('21년 대비 '25년 설문문항 수 변화) [가맹] 34→52개 [유통] 54→64개 [대리점] 40→45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등의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등기·메일·문자를 이용한 안내, 고객센터 운영, 응답 독려, 답례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5년간 서면실태조사 참여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사항>

연도	가맹	유통	대리점
2021년	-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답례품 제공	-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2022년			
2023년		-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답례품 제공('23~)	-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및 카카오톡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답례품 제공
2024년			
2025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연도별 거래실태 및 거래관행의 변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와 현장 안착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맹점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조사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에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을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급되고 있음.³⁴⁾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과 변화하는 거래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사업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유통 분야 직매입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하였으며, 여행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음.³⁵⁾

□ 그런데, 2025년도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42.8%로 가맹 및 유통 분야에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35) 참고로, 가맹 분야는 2024년 12월 30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음.

미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³⁶⁾

〈가맹·유통·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구 분	조사대상	사용	미사용	사용률
가맹분야	가맹본부	192개	8개	96.0%
유통분야	납품업체	2,793개	75개	97.4%
대리점분야	공급업자	213개	285개	4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최근 4년간 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43%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급 확대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대리점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³⁷⁾〉

업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식음료	62.5%	54.5%	50.8%	54.1%
가구	50.0%	30.0%	40.0%	36.4%
도서출판	33.3%	27.3%	46.2%	25.0%
제약	32.1%	34.5%	39.2%	42.9%
의류	57.5%	65.9%	66.7%	60.6%
통신	27.3%	38.9%	38.9%	35.3%
기계	38.1%	33.3%	47.6%	43.5%
사료	42.3%	36.4%	40.0%	31.6%
생활용품	54.8%	46.4%	50.0%	52.0%
주류	25.0%	16.7%	14.3%	16.7%
페인트	33.3%	25.0%	41.7%	50.0%
화장품	55.0%	66.7%	68.4%	38.9%
자동차판매	28.6%	33.3%	20.0%	25.0%
자동차부품	40.4%	39.2%	40.8%	34.8%
보일러	66.7%	66.7%	50.0%	80.0%
가전	47.2%	50.0%	46.7%	51.7%
석유유통	26.7%	32.3%	46.2%	33.3%
의료기기	37.7%	40.8%	39.4%	39.7%
총합	43.0%	43.0%	45.1%	42.8%

※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된 업종만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6) 표준계약서 미사용 공급업자 중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감안하여도 실질적인 사용률은 약 69.3%(전년도 대비 2.7%p 감소)로 추정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함.

37) 202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2024년도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2024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가 다양한 업종³⁸⁾ 및 거래형태³⁹⁾가 존재하여 표준계약서 사용률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대리점법상 의무사항보다 강화된 대리점주 보호 조항⁴⁰⁾이 포함된 점도 공급업자의 사용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및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⁴¹⁾

○ 또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업종별 거래 특성과 계약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급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38) 대리점 분야: 의류, 가구, 가전, 기계, 화장품, 자동차, 통신 등 19개 업종

하도급 분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3개 업종

유통업 분야: 소매업 1개 업종(8개 업체)

39) 전속/비전속 대리점, 도매/소매 대리점, 위탁/재판매 대리점, 온/오프라인

40) (예) 대리점법에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절차,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금지 의무 등을 규정

41) 현재는 상생 협력 모범업체 선발 기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여부를 포함하고 있음.

*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의 필수요건 중 하나로서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항목에 18점 배정(100점 만점)

않는 사유로 ‘거래관계 및 업종의 특수성’을 답변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5.4%p)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에 대리점법상 의무사항보다 강화된 대리점주 보호조항이 포함된 점이 사용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단순한 홍보나 사용 권장만으로는 사용률 제고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공급업자의 표준대리점계약서 미사용 사유〉

사유	2023년	2024년	증감
기존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⁴²⁾)	50.0%	46.3%	△3.7 %p
거래관계 및 업종 특수성	24.8%	30.2%	5.4 %p
표준대리점계약서로 전환 예정	9.9%	10.5%	0.6 %p
표준대리점계약서 알지 못했음	1.4%	0.7%	△0.7 %p
기타	13.8%	12.3%	△1.5 %p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및 2025년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미사용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 거래 관계 및 업종별 특수성, 강화된 대리점주 보호 조항에 대한 의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등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2) 2023년: 표준대리점 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2024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70% 이상 반영

1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⁴³⁾: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강화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국제협력 및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18억 1,200만원 중 1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792	1,792	-	20	-	1,812	1,589	203	20	1,304
소비자의날 행사	83	83	-	-	-	83	83	-	-	43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1	11	-	△4	-	7	6	-	1	18
소비자정책사업운영 지원	42	42	-	-	-	42	42	-	-	45
특수전자거래인식개선	40	40	-	-	-	40	40	-	-	20
소비자중심경영활성화	150	150	-	-	-	150	150	-	-	150
소비자정책연구용역	40	40	-	△15	-	25	25	-	-	40
표준약관 교육	11	11	-	-	-	11	11	-	-	11
소비자정책위원회운영	29	29	-	△1	-	28	24	-	4	29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	△1	-	180	180	-	-	360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50	50	-	△20	-	30	29	-	1	50

43) 세부사업: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점 대응과제 직권조사		61	61	-	-	-	61	61	-	-	55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	-	-	25	24	-	1	25
소비자 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	△40	-	-	-	-	-	-
SNS 부당광고상시 모니터링		189	189	-	-	-	189	185	-	4	189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6	56	-	-	-	56	51	-	5	56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75	75	-	△1	-	74	74	-	-	19
소비자관련 법률교육 콘텐츠 제작		40	40	-	△20	-	20	18	-	2	11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9	9	-	-	-	9	9	-	-	9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660	660	-	123	-	783	578	203	2	17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300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의 날’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의 날	83	83	-	-	-	83	83	-	-
· 일반수용비(210-01)	1	1	-	-	-	1	1	-	-
· 임차료(210-07)	40	40	-	-	-	40	40	-	-
· 일반용역비(210-14)	39	39	-	-	-	39	39	-	-
· 사업추진비(240-01)	3	3	-	-	-	3	3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날’을 개최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을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였음.

〈2025년도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방식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소비자원	2025. 10. 23. ~ 12. 31.	3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사업의 입찰공고 내역을 살펴보면,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44)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4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조45)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46)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찰참여를 허용하였으며, 행사대행업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였음.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 ‘제30회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입찰공고 내역 >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공동이행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와 같이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국제회의기획업종, 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내용은 행사장 선정·대관, 행사기획, 무대 설치, 행사 진행, 사회자 섭외, 영상 제작, 홍보, 안내인력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등 행사대행 전반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30회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과업지시서 >

업무구분	과업 내용
1. 총괄	☐ 전 부문 소요예산 산출 ☐ 현장 진행계획서 마련 및 지속 업데이트 ☐ 집행경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에는 예산 집행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가 포함되어야 함 ○ 예산집행내용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각 항목별 계산내역을 명시할 것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시내용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업결과 최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행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2. 기념식	☐ 행사장소 선정 및 대관 행사 주체선정 ☐ 초청인사 관리 및 포상대상자 행사참석 관리 ○ 초청메일 발송리스트 인적사항 등 정리 ○ 각종 문의 안내(등록절차 등) 및 참석자 최종 참석 확인(전화문의) ☐ 기념식 식장 디자인 및 행사장 무대세팅

업무구분	과업 내용
	☐ 행사진행 전반 관리(접수테스크 운영 포함) ☐ 기념식 진행 시나리오 작성 등 행사진행사항 일체 ☐ 행사 참석자 안내도 부착 및 설치, 안내요원 배치 ☐ 행사 사회자 섭외·사진촬영 등 행사 부속사항 관리 ☐ 참석 귀빈 대기실 구성, 운영 ☐ 종합 리허설 준비 및 시행
3. 영상 제작 및 홍보	☐ 소비자의날 관련 축하·홍보 영상 제작 ☐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 현수막, X배너 등 제작 ☐ 초청장 인쇄 및 발송 ☐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실시
4. 인력	☐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행사진행요원, 초청인사 안내요원, 수상자 안내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⁴⁷⁾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47) 「판로지원법」

제4조(구매 중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기업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3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비영리법인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

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사업과 같은 일반적인 행사대행 또는 기념식 운영 용역은 해당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필요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소비자원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자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⁴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심사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을 예외적으로 입찰에 참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

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하는지를 명확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참가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내역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 내역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은 플랫폼 유형별 거래 구조·거래현황 및 소비자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경쟁촉진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 환경개선	50	50	-	△20	-	30	29	-	1
· 일반연구비(260-01)	50	50	-	△20	-	30	29	-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 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2022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선방안(2023년),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점검 실태조사·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 합리화(2건, 2024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25년) 연구를 실시하였음.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연구용역명	계약자
2025	50	30 ⁴⁹⁾	29	1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25. 6. ~ 11.)	한국법제연구원 (김00)
2024	50	50	50	-	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 합리화 관련 연구 (2,000만원, 2024. 9. ~ 12.)	한국외대 연구실험실 (정00)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점검 실태조사 (3,000만원, 2024. 4. ~ 7.)	한국소비자원
2023	50	50	45	5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선방안(2023. 6. ~ 12.)	한국소비자연맹 (강00)
2022	50	50	50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 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2022.. 8. ~ 12.)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 (정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5년에 실시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표준약관 마련 연구’는 소비자계약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구조·거래관행 개선, 온라인 소비자 피해구제 등 내역사업의 주요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49) 일반연구비 2,000만원을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의 상용SW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430-01)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있음에도, 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집행될 소지가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 제도개선에 활용되어야 할 연구재원이 분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사업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과제를 우선 발굴·수행할 필요가 있음.

(3)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전 기술·보안 검토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7억 8,3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660	660	-	123	-	783	578	203	2
· 일반연구비(260-01)	660	660	-	-	-	660	457	203	-
· 자산취득비(260-01)	-	-	-	123	-	123	121	-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경과는 2024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하였고, 2025년 6월에 제한경쟁 방

식으로 에스큐아이소프트(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 30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26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 현액	계약 액	집행 액	계약자	계약 방식	계약기간
2024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ISP	200	114	114	(주)아던트	제한 경쟁	2024. 3. 22. ~ 2024. 6. 20
2025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660	653	457	에스큐아이 소프트 (주)	제한 경쟁	(변경 전) 2025. 6. 25. ~ 2026. 1. 22 (변경 후 ⁵⁰⁾) 2025. 6. 25. ~ 2026. 9. 30
		123	121	121	팬타시큐리티시스템(주) (주)다에스코아 반디에스앤씨 반디에스앤씨 주식회사 라온소프트	상용 SW 조달구매	2025. 11. 28. 2025. 12.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사업의 ISP 단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202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반 용역비로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

50)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 8. 20. 본회의에서 의
결되었음.

클라우드를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보안 SW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지 않았음.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정부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및 예산과목	사업 세부내역	금액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일반연구비, 260-01)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660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DB 구축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구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공정위 업무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자체 관련정보 지원 제공 기능	
	내·외부 연계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사용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은 보안성 검토⁵¹⁾ 결과 해당 플랫폼이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클라우드가 아닌 국가정보관리원의 G클라우드⁵²⁾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5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11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보안성 등을 고려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52) 「전자정부법」 제5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및 각 센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2조제1항제1호).

□ 이에 따라 G클라우드 입주에 필요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동일 세부 사업 내 소비자정책연구용역 등 4개 내역사업 및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사업의 우수 지자체 포상금 예산에서 총 1억 2,300만원을 전용하여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용 SW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 예산	전용액		전용후 2025 예산현액
세부사업	세사업	세목명		증	감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1400-1431-600)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자산취득 비 (430-01)	-	123		123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일반연구비 (260-01)	40		△23	17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일반연구비 (260-01)	50		△20	30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38		△38	-
		업무추진비 (240-01)	2		△2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일반용역비 (210-14)	40		△20	20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1400-1441-610)	우수지자체 포상금	포상금 (310-03)	20		△2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G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추가 상용 SW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품명	수량 (식)	단가	소요예산	비고
DB암호화	2	34	69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주)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AGENT	2	9.4	18.8	(주)위즈디엔 에스코리아
통합계정관리(IAM)	2	9	18	반디에스앤씨
통합계정인증(SSO)	2	6	12	반디에스앤씨
형상관리 AGENT	2	1.5	3	주식회사 리 메인소프트
조달수수료	2	0.54%	0.6	
합 계			12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이러한 예산 전용을 통해 감액된 소비자 정책연구 용역 사업 등의 경우 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전용 감액 사업의 2025년도 계획 및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감액규모	예산현액	계획	실적
선진 소비자 정책	소비자 정책연구 용역	40	17	소비자정책 관련 연구용역 1 ~ 2건 추진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전략 기초분석 연구(1건)

세부사업	내역사업	감액규모	예산현액	계획	실적
추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 개선	50	30	전자상거래 분야 등 연구용역 1 ~ 2건 추진	요가·필라테스 표 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1건)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38	-	소비자피해 발생 예상분야를 신규 발굴하여 위반행위 점검 추진	집행실적 없음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40	20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동영상, 카드뉴스 형식 콘텐츠 제작 등	신유형 부당광고 피해예방 교육컨텐츠 제작 1식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우수지자체 포상금	20	-	전국 지자체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집행실적 없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공공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정보화사업의 기본 설계 단계인 ISP 수립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 보안 및 정보자원관리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ISP 수립단계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다른 사업의 규모 축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ISP 수립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업무 성격, 보안등급, 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계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축 단계에서의 계획변경과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⁵³⁾: 상담수당 예산운용의 적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43억 700만원 중 42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3,527	3,527	-	50	730	4,307	4,279	-	28	3,877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203	2,203	-	50	730	2,983	2,983	-	-	2,553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144	1,144	-	-	-	1,144	1,139	-	5	1,144
공공요금	180	180	-	-	-	180	157	-	23	18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3) 세부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상담이 필요한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영역을 선택하면 인근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함으로써 상담과 피해구제를 진행하게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세부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상담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⁵⁴⁾.

□ 최근 5년간 상담수당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상담위탁수당 1억 7,200만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2025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상담위탁수당 6,500만원을 2026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제3조⁵⁵⁾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⁵⁶⁾”에 비추어 적절한 예산집행인지 검토가 필요함.

5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건수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5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56)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임. 즉,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임.

〈최근 5년간 상담수당 예산집행현황〉

(단위: 건,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보 제공	예산 편성	450,000	350,000	320,000	252,000	246,240
	실적	290,440	235,301	252,091	282,795	326,703
	차이	159,560	114,699	67,909	△30,795	△80,463
피해 처리	예산 편성	120,000	120,000	115,000	120,750	111,490
	피해처리	102,085	100,466	113,661	124,904	167,939
	차이	17,915	19,534	1,339	△4,154	△56,449
예산현액		29.8	25.3	23.6	21.0	27.8(26.1*)
상담수당		21.2	18.6	20.4	22.7	26.8
잔 액		8.6	6.7	3.6	△1.7*	△0.7**

* 집행부족분 1억 7천만원은 2025년 상담수당 예산으로 충당

** 집행부족분(2025.12.22. ~ 12.31 기간동안 발생한 상담 건에 대한 상담수당)을 2026년 예산으로 2026.1.28.에 6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담수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전년도 상담실적을 기초로 다음 연도의 상담건수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제 상담건수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상담수당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음.

□ 특히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비(7억 3,000만원) 및 예산 전용(5,000만원) 등을 통하여 부족한 상담수당 재원

을 확보하였음에도, 2024회계연도 상담수당 부족분(1억 7,200만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했던 영향으로 연말 상담수당 일부(6,500만원)를 다시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 2024회계연도 상담수당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해당연도의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다시 당해연도 수당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예산부족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회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상담수요 예측 실패 및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동일한 집행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도 중 상담실적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협약서」 제8조제3항⁵⁷⁾에 따른 운영비 조정기준을 적시에 활용하는 한편, 최근 소비자 피해 발생 양상과 상담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상담수요 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7)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협약서」

제8조(상담업무 운영비용) ②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간 배정된 상담위탁 운영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상담에 대한 처리건당 4,500원, 피해해결 처리건당 8,000원
2. 상담관리자 인건비 월 100만원
3.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담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말에 각 단체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정위는 예산감소, 업무량 증감 및 경제사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업무 운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⁵⁸⁾: 홍보비의 집행절차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은 26개 기관이 보유한 리콜, 안전·피해예방, 인증정보 등 소비자생활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분쟁조정 포함) 신청창구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12억 2,900만원 중 1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여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1,228	1,228	1	-	-	1,229	1,202	6	21	1,188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452	452	1	7	-	460	453	2	5	479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65	65	-	-	-	65	64	-	1	65
시스템 유지보수	492	492	-	-	-	492	479	4	9	492
시스템 기능개선	219	219	-	△7	-	212	206	-	6	15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8) 세부사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하는 홍보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5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65	65	-	-	-	65	64	-	1	65
일반수용비 (210-01)	65	65	-	-	-	65	64	-	1	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은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한 후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광고 및 서울정부청사 옥외전광판 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제5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⁵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었음.

59)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2025년도 소비자24 연간 홍보예산액〉

(단위: 천원)

광고유형 및 목적	기간	집행 예산
온라인 홍보 업체를 통한 광고진행	1 ~ 12월	37,000
홈페이지 이벤트 진행	1 ~ 12월	13,000
옥외전광판 표출	6 ~ 11월	2,970
리플릿 등 홍보물품 제작	수시	12,000
합 계		64,97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소비자24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계약건명	계약 상대방	집행액	홍보실적
온라인(모바일 앱)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캐시탁 주식회사, 넛지헬스케어 주식회사)	46,948	소비자24 방문 유도 를 위한 온라인 이 벤트 실시(33회)
	지에스엠비즈 주식회사	2,212	소비자24 온라인 이 벤트 경품 구입(6건)
	우정사업본부, 신세종로지스	335	경품 발송 배송비
리플렛 제작	경성문화사	2,246	공공기관,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리 플렛 배포
포스터 제작	경성문화사	594	전국 지하철 역사 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 부착
홍보 물품 구매	삼일기획, 고려기프트	8,629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물품 배포
서울정부청사 옥외 전광판 표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동조합)	2,970	옥외 전광판에 소비 자24 홍보영상 표출
합 계		63,93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광고법」 제2조⁶⁰⁾는 정부기관 등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광고·홍보 등을 실시하는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로 규정하고, 동 법 제3조, 제5조 및 제8조⁶¹⁾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연간 광고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며, 광고 종료 후 광고료 및 관련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 이러한 정부광고는 광고계획 수립, 광고 의뢰, 광고 집행, 광고효과 확인 및 광고료 지급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반복 추진되는 계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²⁴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 브랜드 홍보, 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이벤트 경품 등의 홍보비를 관서운영경비 방식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등⁶²⁾에 따라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는 관서운영

60)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제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61) 「정부광고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6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2조, 「수입과 지출 중에 대한 회계예규」 제50조에 따르면 운영비(210)의 경우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금액제한 없음)는 관서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24 홍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건 명	예산과목	지급 구분	지급 금액	수령인명	비고
소비자24 온라인(모바일 앱) /오프라인 광고·홍보대금 지급 2건	일반수용비 (210-01)	관서운영경비	49,918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물품 3건 (치약칫솔 세트 등)	"	"	8,629	고려기프트(주), 삼일기획	
소비자24 온라인 이벤트 경품 대금 등 7건	"	"	2,212	삼성카드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물품 2건 (리플릿 및 포스터)	"	"	2,840	경성문화사	
홍보물품 및 제주지원 홍보물품 배송비 지급 2건	"	"	335	우정사업본부, (주)신세종로지스	
합 계			63,93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러나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⁶³⁾에 따라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국고금 관리법」 제22조⁶⁴⁾에 따른 일반

63)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64)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적인 지출절차를 따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 지급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소비자²⁴ 홍보사업은 연초에 수립된 홍보계획에 따라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계획적·계속적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지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동 사업의 광고비 상당수를 건별 500만원 이하의 관서운
영경비 방식으로 반복하여 지급한 것은 법령상 허용 여부와 별개
로, 관서운영경비 제도의 취지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
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24 관서운영경비 지급방식 광고·홍보대금지급 상세내역>

(단위: 천원)

연 번	지급일	수령인	건명	지급 액	비고
1	2025-2-13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모바일 광고대금 지급요청(1월)	2,420	
2	2025-3-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모바일 광고대금 지급요청(2월)(브랜드 홍보)	2,420	
3	2025-3-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모바일 광고대금 지급요청(2월)(이벤트 홍보)	3,630	
4	2025-4-17	한국언론진흥재단	캐시닥 용돈퀴즈 온라인 광고(4월 청구분)	4,356	3월분
5	2025-5-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5월 청구분)	4,356	4월분
6	2025-5-27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5월 청구분)	3,630	4월 이벤트 홍보
7	2025-6-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6월 청구분)	4,356	5월분
8	2025-7-3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브랜드 홍보대금 지급(6월분)	4,356	6월분
9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홍보대금 지급	4,356	7,8월분
10	2025-10-13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	4,356	8,9월분
11	2025-12-11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	4,356	10,11월분
12	2025-12-2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홍보대금 지급(11, 12월분)	4,356	11, 12월분
13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청구)	330	
14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청구)	330	
15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청구)	330	
16	2025-9-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330	
17	2025-9-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330	
18	2025-9-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330	
19	2025-11-12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대금 지급(10월)	330	
20	2025-12-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대금 지급(11월)	330	
21	2025-12-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대금 지급(9월)	330	
합 계				49,9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광고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성 홍보는 일반적인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13.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⁶⁵⁾: UNCTAD 공무원 파견 관련 예산편성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 회계연도 예산현액 13억 9,200만원 중 11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 회계연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346	1,346	7	39	-	1,392	1,123	7	262	1,81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당국과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UN 산하 국제 기구인 UN Trade and Development(UNCTAD)에 소속 공무원을 3년 주기로 파견하고 있음.

○ 통상 UNCTAD 공무원 파견경비는 임차료(210-07), 국외업무여비

65) 세부사업: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220-02), 기타보전금(310-04)으로 구성되고, 2025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액은 총 약 1억 700만원임.

〈연도별 UNCTAD 공무원 파견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임차료		국외업무여비		기타보전금		합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1	63,795	48,138	24,741	0	19,000	8,720	107,536	56,858
2022	54,240	81,745	19,676	46,291	17,700	8,811	91,616	136,847
2023	61,920	73,897	19,676	0	20,248	1,769	101,844	75,666
2024	62,400	80,195	19,276	0	20,405	1,880	102,081	82,075
2025	66,240	114,432	19,277	54,807	21,660	1,649	107,177	170,78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의 UNCTAD 공무원 파견 예산은 매년 약 1억원 내외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 반면,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매우 큰데, 이는 공무원의 파견 주기가 3년이기 때문인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파견자 교체가 이루어지는 2022년과 2025년의 집행액은 각각 약 1억 3,700만원(예산액: 약 9,200만원), 약 1억 7,100만원(예산액: 약 1억 72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 이러한 초과집행이 주로 임차료와 국외업무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은 파견자의 이사비와 항공료 등인 것으로 추정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를 비롯해 파견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세목변경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그 밖의 해에는 예산이 남아 다시 전용이나 세목변경을 통해 다른 목적의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 예컨대, 2025 회계연도의 경우 임차료가 부족하여 약 4,800만원을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하였고,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은 약 3,800만 원을 전용하여 충당하였음.

〈예산의 전용 등 실시내역(2022년, 2025년)〉

(단위: 천원)

연도		편성액	집행액	전용 등
2022년	임차료	54,240	81,745	· 세목조정(13,490) · 동일 세목 내 집행잔액 사용(14,015)
	국외업무여비	19,676	46,921	· 세목조정(17,691) · 동일 세목 내 집행잔액 사용(8,924)
2025년	임차료	66,240	114,432	· 내역변경(2,335) · 세목조정(45,857)
	국외업무여비	19,277	54,807	· 전용(37,5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UNCTAD 공무원의 파견은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사업으로서 파견자 교체 시기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파견 교체 여부에 따라 예산의 전용 또는 세목변경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국회 예산 심사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예산의 전용이나 세목변경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를 사실상 정례적인 예산 조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UNCTAD 공무원의 파견 교체시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 사업의 예산 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⁶⁶⁾: 일부 지방사무소 국내 여비의 적정 편성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각 지방사무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 6,000만원 중 9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지방사무소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 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958	958	-	7 △5	-	960	957	-	2	1,024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31	231	-	1	-	232	232	-	-	202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11	211	-	2	-	213	213	-	-	574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48	348	-	△4	-	344	343	-	1	78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7	87	-	4	-	91	91	-	-	89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1	81	-	△1	-	80	78	-	1	8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6) 세부사업: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9),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0),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1),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3)

2) 검토의견

□ 2025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사무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⁶⁷⁾⁶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2025년 기준)〉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⁶⁹⁾ 토대로 재작성)

6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2025. 12. 30. 개정, 2026. 3. 1. 시행)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임(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임).

6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방사무소의 국내여비는 사건조사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2025년에는 5곳 지방사무소의 국내여비로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200만원이 집행되어 2,8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각 지방사무소별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서울사무소	50	10	60	60	50*
부산사무소	42	12	54	54	42
광주사무소	28	3	31	31	28
대전사무소	26	-	26	26	26
대구사무소	28	3	31	31	28

* 경인사무소와 별도로 편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년간의 각 지방사무소의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지방사무소에서는 당초 편성된 국내여비 예산을 초과하는 소요가 발생하여 부족분을 다른 사업이나 비목에서 전용이나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특히, 부산사무소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서울·광주사무소도 최근 2년 연속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일부 지방사무소에서는 국내여비 부족이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6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최근 3년간 각 지방사무소별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서울 사무소	2025년	50	10	60	60	-
	2024년	50	3	53	52	1
	2023년	47	-	47	46	1
부산 사무소	2025년	42	12	54	54	-
	2024년	42	21	63	63	-
	2023년	39	7	46	46	-
광주 사무소	2025년	28	3	31	31	-
	2024년	28	6	34	34	-
	2023년	27	△4	23	22	1
대전 사무소	2025년	26	-	26	26	-
	2024년	26	△12	14	12	2
	2023년	24	1	25	25	-
대구 사무소	2025년	28	3	31	31	-
	2024년	28	△4	24	23	1
	2023년	26	1	27	2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각 지방사무소 국내여비로의 전용, 조정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서울사무소〉

2025년	전용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9)	일반 수용비 (210-01)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9)	국내여비 (220-01)	9.7
	내역 변경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4)	국내여비 (220-01)			0.3
2024년	내역 변경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국내여비 (220-01)			2.5

구 분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부산사무소>						
2025년	전용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일반 수용비 (210-01)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국내여비 (220-01)	7.8
			임차료 (210-07)			1.0
			유류비 (210-08)			0.6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8
	내역 변경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국내여비 (220-01)			2.0
2024년	전용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일반 수용비 (210-01)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국내여비 (220-01)	10
	내역 변경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국내여비 (220-01)			2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내여비 (220-01)			3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국내여비 (220-01)			1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국내여비 (220-01)			5
2023년	전용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일반 수용비 (210-01)			3.8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2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9

구 분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광주사무소>						
2025년	전용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임차료 (210-07)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국내여비 (220-01)	1
			유류비 (210-08)			1.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5
2024년	전용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일반 수용비 (210-01)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국내여비 (220-01)	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
			유류비 (210-08)			1.2
<대전사무소>						
2023년	전용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국내여비 (220-01)	0.6
<대구사무소>						
2025년	내역 변경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국내여비 (220-01)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국내여비 (220-01)	3
2023년	전용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일반 수용비 (210-01)			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는 일부 지방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여비 예산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예산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23년 대비 2025년 현장조사건수는 서울·부산·광주사무소에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여비 예산은 모든 지방사무소에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최근 3년간 지방사무소 현장조사 출장건수〉

(단위: 건, 백만원)

소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75	87	136
	예산액	47	50	50
부산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86	85	115
	예산액	39	42	42
광주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43	112	80
	예산액	27	28	28
대전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41	32	38
	예산액	24	26	26
대구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64	53	43
	예산액	26	28	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예산의 전용이나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 70), 예산집행지침⁷¹⁾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는

70)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7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396

□ 내역변경의 개념

-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내역변경(조정) 절차

- 내역변경(조정)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제도인 만큼, 동일한 비목에서 연례적으로 예산 조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이 실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인 예산 조정이 발생한 지방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출장건수, 출장인원, 출장일수 등 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최근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적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5. 한국소비자원 출연⁷²⁾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소비자원 출연”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액(수입실적)은 출연금 536억 4,600만원 등 563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389억 2,600만원, 사업비 118억 5,900만원, 운영비 43억 7,500만원 등 총 551억 6,000만원(집행률 97.2%)임.

〈2025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53,696	53,696	53,646	△50	99.9
2. 자체수입	3,044	3,044	2,727	△317	89.6
- 전년도이월금	952	952	883	△69	92.8
- 수탁용역수입	1,483	1,483	1,332	△151	89.8
- 교육연수수입	5	5	-	△5	-
- 이자수입	248	248	178	△70	71.8
- 임대·기타수입	356	356	334	△22	93.8
수 입 합 계	56,740	56,740	56,373	△367	99.4

(자료: 한국소비자원)

72) 세부사업: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2025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37,950	38,931	38,926	5	100.0
2. 사업비	12,763	12,763	11,859	904	92.9
(항)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688	1,643	1,416	227	86.2
(세항) 정책연구	578	578	502	76	86.9
(세항) 거래조사	909	864	740	124	85.6
(세항) 대외협력	201	201	174	27	86.6
(항)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2,787	2,832	2,795	37	98.7
(세항) 소비자 정보제공	369	348	339	9	97.4
(세항) 소비자 역량강화	121	101	97	4	96.0
(세항) 소비자원 정보화	2,176	2,221	2,199	22	99.0
(세항) 소비자홍보	121	162	160	2	98.8
(항)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5,203	5,203	4,857	346	93.3
(세항) 소비자안전	2,165	2,165	2,003	162	92.5
(세항) 시험검사	3,038	3,038	2,854	184	93.9
(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743	1,743	1,507	236	86.5
(세항) 피해구제	864	900	832	68	92.4
(세항) 분쟁조정위원회	546	510	433	77	84.9
(세항) 지방소비자	333	333	242	91	72.7
(항) 수탁용역	1,342	1,342	1,284	58	95.7
(세항) 수탁용역	1,342	1,342	1,284	58	95.7
3. 운영비	4,639	4,639	4,375	264	94.3
(세항) 경영기획	4,056	4,056	3,826	230	94.3
(세항) 부서운영비	583	583	549	34	94.2
4. 예비비	1,388	407	-	407	-
지출합계	56,740	56,740	55,160	1,580	97.2

(자료: 한국소비자원)

2) 검토의견

(1) 연말 인건비 잔액의 과도한 사후 전용 지양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2025회계연도 인건비 수정예산 389억 3,100만원 중 389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당초예산	이·전용 등	수정예산	집행액	잔액	비고(사유)
보수	33,566	1,044	34,610	34,605	5	
기본급	18,380	△241	18,139	18,139	-	예비비에 편성된 증원인건비 전용 및 타비목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상여금	4,165	496	4,661	4,661	-	3급 이하 평균 인원 증가로 고정 상 여 금 (31.6%) 지급분 증가
사회보험 부담금	2,633	171	2,804	2,804	-	'25년도 사회보험부담금 인상
퇴직급여 충당금	2,028	-	2,028	2,028	-	
성과급	1,375	△153	1,222	1,222	-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현원 차이로 잔액 발생

비목	당초예산	이·전용 등	수정예산	집행액	잔액	비고(사유)
복리후생비	2,266	622	2,266	2,266	-	
직급보조비	1,396	△80	1,316	1,312	4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제수당	1,324	△130	1,193	1,193	-	정·현원 차이로 잔액 발생
경영평가 성과급	-	981	981	980	1	예비비에 편성된 경영평가 성과급 전용
상용임금	3,976	131	4,107	4,107	-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 및 상시근무인원 증가
일용임금	245	△31	214,413	214	-	
합계	37,787	1,144	38,931	38,926	5	

(자료: 한국소지바원)

□ 한국소비자원의 2025회계연도 인건비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12월 31일에 인건비 비목간 총 4건, 7억 9,8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일자	조정사유	재원			충당			조정액
			관	세항	목	관	세항	목	
1	12.31.	공무직 사회보험금 인상 등 상용임금 재원 마련	인건비	인건비	일용임금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31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상용임금	100
2	12.31.	인건비 내 비목 조정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인건비	상여금	304
				인건비	제수당		인건비	상여금	130

연 번	일 자	조정사유	재원			충당			조정액
			관	세 항	목	관	세 항	목	
				인건비	직급 보조비		인건비	상여금	62
3	12.31.	인건비 내 비목 조정	인건비	인건비	직급 보조비	인건비	인건비	복리 후생비	1
4	12.31.	인건비 내 비목 조정	인건비	인건비	직급 보조비	인건비	인건비	국민 연금 부담금	17
				인건비	성 과 급		인건비	국민 연금 부담금	153
합 계									798

(자료: 한국소비자원)

□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⁷³⁾은 회계연도 말에 경상경비를 집중 집행하거나 과도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73)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회계연도 말에 경상경비를 집중 집행하거나 과도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급여(12. 15.) 및 임금인상분(12. 30.)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를 우선 집행한 후, 12월 31일에 인건비 비목간 전용을 일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12월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원)

지출결의일자	항	세 항	목	지출건명	지출결의금액
2025-12-30	인건비	인건비	상여금	2025년 임금인상분 지급	116,277,650
2025-12-30	인건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2025년 임금인상분 지급	21,424,670
2025-12-30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임금인상분 지급	37,896,35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산재보험료 납부	16,408,29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국민연금 납부	92,101,46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	91,480,74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고용보험료 납부	33,202,56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산재보험료 납부	2,187,67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	11,901,19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국민연금 납부	11,242,07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고용보험료 납부	4,387,18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상여금	2025년 12월 정규직 급여	385,229,75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2025년 12월 정규직 급여	119,267,38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계약직 급여	11,589,08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공무원직 급여	303,199,84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국민연금 납부	91,505,16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고용보험료 납부	33,159,47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	93,173,110

지출결의일자	항	세 항	목	지출 건 명	지출결의금액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산재보험료 납부	16,383,07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	11,977,44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국민연금 납부	11,352,32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산재보험료 납부	2,186,62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고용보험료 납부	4,385,110
합 계					1,521,918,180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하여 인건비는 퇴직, 휴·복직, 단축근로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액 변동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전용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 및 임금 지급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연말에 일괄 전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⁷⁴⁾.

□ 그러나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요인인 만큼,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연말에 대규모 사후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적인 예산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인건비 집행 변동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월별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74)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도에 보수체계의 변화(*직무급 신규 도입)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기본급(직급급·근속급·직무급)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 직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적기에 전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연말에 과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기관 고유기능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평가⁷⁵⁾ 대응을 위한 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정례협의체⁷⁶⁾ 참여기업인 L사와 공동으로 L사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항)-(세항)-(목)	예산		집행액
		당초	수정	
민간협업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	소비자안전-위해정 보-일반응역비	-	5	3.8
	대외협력-대외협력 -여비	-	3	3
	운영비-기획예산- 업무추진비	-	0.3	0.3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비용 지원사업	운영비-기획예산 -일반수용비	-	6	5.9
해외 유관기관 방문연수 연계 홍보 지원 사업	-	-	-	-
합 계		-	14.3	13

(자료: 한국소비자원)

75)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의1항에 따라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실시,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 및 각 부처에 통보(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 평가 해외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 지표 평가 기준>

실적	61개사 이상	46~60개사	31~45개사	16~30개사	5~15개사
득점	3.0	2.4	1.8	1.2	0.6

76) 안전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13개 산업 분야의 152개 기업, 8개 협회가 참여

□ 한국소비자원은 민간협업을 통해 홍콩(Cosmoprof Hong Kong 2025)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 참가 16개사, 해외판로 개척 비용지원 20개사 및 연계 홍보지원 1개사 등 총 37개사를 지원하였음.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결과〉

○ 민간협업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

- (개요)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사업자정례협의체 참여사인 L사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공동 사업 추진
- (지원내용) L사 협력 중소기업의 국제 전시회(Cosmoprof Hong Kong 2025*) 참여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탐색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지원 실적) L사 협력 중소기업 16개 사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비용 지원 사업

-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전시회 참여, 바이어 발굴, 물품 발송 등 수출 전과정에 걸친 비용 지원
- (지원내용) 2025년 해외판로 개척 활동과 관련하여 비용 지출이 있는 기업 중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지원 실적)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20개 사

○ 해외 유관기관 방문연수 연계 홍보 지원 사업

- (개요) 해외 유관기관의 소비자원 방문 연수 시 기관 협력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전 개최
- (지원내용) 연수 프로그램에 홍보전을 포함하여 기관 협력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 및 설명을 통한 홍보 실시
- (지원 실적) 사업 관련 협업 중소기업 1개 사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⁷⁷⁾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안전 확보,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수출지원 또는 해외마케팅 지원은 본래 기관의 법정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소비자원의 법정 기능 및 정부출연사업의 목적과의 연계성이 다소 낮고,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평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예산 편성 시 기업과의 협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사업 단독 세부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 내 ‘대외협력’ 및 소비자안전 사업 내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과 연계하여 기존 세부사업

77)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5조(업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의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 물론 공공기관은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자율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정부출연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부출연사업의 목적 범위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안전, 소비자중심경영(CCM⁷⁸⁾), 제품안전관리 등 기관의 설립목적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8)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⁷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 가맹·대리점종합지원, 공정위 수탁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조정원의 2025회계연도 수입액(수입실적)은 공정위 출연금 127억 5,700만원 등 141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82억 2,200만원, 운영비 26억 7,900만원, 사업비 19억 8,800만원 등 총 140억 4,600만원(집행률 95.8%)임.

〈2025회계연도 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 예산	수정 예산 (A)	수입 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2,757	12,757	12,757	-	100
2. 기타수입	609	609	175	△434	28.7
3. 수탁사업비	1,242	1,296	1,174	△122	90.6
수 입 합 계	14,608	14,662	14,106	△556	96.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9) 세부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2025회계연도 조정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8,504	8,504	8,222	282	96.7
2. 운영비	2,698	2,698	2,679	19	99.3
3. 사업비	2,164	2,164	1,988	176	91.9
- 분쟁조정	707	707	676	31	95.6
- 공정거래연구	513	513	427	86	83.2
- 협약이행평가	291	291	276	15	94.9
- 공정거래전문교육	101	101	99	2	98.0
- 가맹·대리점종합지원	341	341	320	21	93.9
- 동의의결이행관리	17	17	15	2	88.2
- 시정조치이행관리	69	69	51	18	73.9
- 전산운영지원	125	125	124	1	99.2
4. 수탁사업비	1,242	1,296	1,157	139	89.3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337	337	328	9	97.3
- CP등급평가	381	384	379	5	98.7
- 기술자료비밀보호컨설팅	-	51	36	15	70.6
- 경쟁영향평가 연구	320	320	214	106	66.9
- 하도급연동지원본부	204	204	200	4	98.0
합 계	14,608	14,662	14,046	616	95.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검토의견

(1) 분쟁조정 처리량 증가에 대응한 신속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분쟁조정사업은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7억 700만원 대비 95.6%인 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⁸⁰⁾, 분쟁당사자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2025회계연도 분쟁조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분쟁조정사업	707	707	676	31	95.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⁸¹⁾등 6개 법률⁸²⁾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의 6개

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1)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8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률 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2023년 3,151건에서 2025년 4,407건으로 39.9% 증가하였으나, 조정성립률은 79%에서 76%로 3%p 하락 하였음.

○ 조정성립 건수가 2023년 1,278건에서 2025년 1,709건으로 증가한 점은 처리량 확대에 따른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불성립 건수도 같은 기간 350건에서 553건으로 58.0% 증가하여 조정성립 건수 증가율 33.7%를 상회하여 조정의 실효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분야별로도 2025년 조정성립률은 대리점 분야가 56%로 가장 낮았고, 공정거래·가맹·하도급 분야도 각각 75%에 그쳤음. 특히 대리점 분야의 성립률은 2023년 90%에서 2025년 56%로 3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건수	증감률	처리건수					성립률 [A/A+B]
				계 [A+B+C]	증감률	성립* [A]	불성립** [B]	종결*** [C]	
2023년	소 계	3,481	22	3,151	10	1,278	350	1,523	79
	공 정	1,372	26	1,267	13	475	135	657	78
	가 맹	605	24	575	12	263	62	250	81
	하도급	1,044	16	929	9	354	100	475	78
	유 통	29	4	26	△24	13	1	12	93
	약 관	339	32	278	3	137	48	93	74
	대리점	92	7	76	△3	36	4	36	90
2024년	소 계	4,041	16	3,840	22	1,450	465	1,925	76
	공 정	1,795	31	1,603	27	624	150	829	81
	가 맹	584	△3	587	2	246	96	245	72
	하도급	1,105	6	1,107	19	375	113	619	77
	유 통	29	-	29	12	16	3	10	84
	약 관	457	35	429	54	152	96	181	61
	대리점	71	△23	85	12	37	7	41	84
2025년	소 계	4,726	17	4,407	15	1,709	553	2,145	76
	공 정	2,424	35	2,174	36	792	258	1,124	75
	가 맹	691	18	595	1	247	81	267	75
	하도급	1,040	△6	1,074	△3	413	137	524	75
	유 통	29	-	29	-	16	-	13	100
	약 관	451	△1	442	3	216	57	169	79
	대리점	91	28	93	9	25	20	48	56

*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스스로 합의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성립 및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또한,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47일에서 2025년 57일로
10일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90일을 초과한 장기 사건은 209건

에서 518건으로 증가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특히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209건에서 2025년 518건으로 147.8% 증가하였고, 전체 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6%에서 11.8%로 5.2%p 높아졌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⁸³⁾ 등 분쟁조정관련 규정⁸⁴⁾은 원칙적으로 신청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양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사건 증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위: 건, %, 일)

구분		처리 건수	기한내		60일 초과		90일도과		평균 처리 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3년	소 계	3,151	2,462	78.1	480	15.3	209	6.6	47
	공정	1,267	1,062	83.8	141	11.1	64	5.1	44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

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4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구분		처리 건수	기한내		60일 초과		90일 초과		평균 처리 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맹	575	459	79.8	84	14.6	32	5.6	44
	하도급	929	697	75.0	156	16.8	76	8.2	48
	유통	26	24	92.3	2	7.7	-	-	39
	약관	278	188	67.6	72	25.9	18	6.5	53
	대리점	76	32	42.1	25	32.9	19	25.0	78
2024년	소 계	3,840	2,943	76.6	638	16.7	259	6.7	49
	공정	1,603	1,330	83.0	204	12.7	69	4.3	45
	가맹	587	467	79.6	95	16.1	25	4.3	45
	하도급	1,107	770	69.6	219	19.7	118	10.7	54
	유통	29	21	72.4	5	17.3	3	10.3	52
	약관	429	319	74.4	89	20.7	21	4.9	51
	대리점	85	36	42.4	26	30.5	23	27.1	76
2025년	소 계	4,407	2,881	65.4	1,008	22.8	518	11.8	57
	공정	2,174	1,423	65.5	539	24.7	212	9.8	56
	가맹	595	401	67.4	136	22.9	58	9.7	54
	하도급	1,074	686	63.9	200	18.6	188	17.5	60
	유통	29	10	34.5	9	31.0	10	34.5	79
	약관	442	317	71.7	99	22.4	26	5.9	51
	대리점	93	44	47.3	25	26.9	24	25.8	7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① 분야별 처리기간 편차에 대한 관리 필요

□ 2025년 분야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대규모유통업거래와 대리점거래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9일로 전체 평균 57일보다 22일 길었고, 하도급 분야도 평균 60일로 나타나 분야별 편차가 큼.

○ 90일 초과 비율도 유통 34.5%, 대리점 25.8%, 하도급 17.5%로서 공정거래 9.8%, 가맹 9.7%, 약관 5.9%보다 현저히 높았음.

○ 조정원은 하도급 분야의 경우 조정금액이 큰 복잡사건과 방대한 제출자료 등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유통·대리점 분야는 사건 수가

적어 협의회 개최 간격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	20	1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	13	1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9	22	18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8	8	4
약관분쟁조정협의회	9	11	12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7	11	8
계	71	85	67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낮은 발생빈도를 감안하더라도,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건관리 및 협의회 운영방식을 마련하여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고액·복잡 하도급 사건은 일반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단순 사건의 처리가 함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건 수가 적은 분야는 정기 협의회 개최 외에 수시개최 형태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처리량 증가에 대응한 인력배분 점검 필요

□ 조정원의 조정 관련 정원은 2023년 45명에서 2025년 52명으로 13.5% 증가하였으나, 현원은 2023년 44명에서 2025년에는 48명으로 9% 증가에 그쳤고,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같은 기간 3,151건에서 4,407건으로 39.9% 증가하였음.

○ 현원 1인당 처리건수는 2023년 약 72건에서 2025년 약 92건으로 증가하므로, 사건 증가와 처리기간 장기화가 인력 부족이나 분야별 인력배분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⁸⁵⁾.

〈최근 3년간 분쟁조정 관련 인력 및 평균 처리건수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23	2024	2025
현원 / 정원	44 / 45	46 / 51	48 / 52
분쟁처리 건수	3,151	3,840	4,407
현원 기준 1인당 처리 건수	71.6	83.5	91.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 자료 재구성)

85) 다만 연말 현재 현원만으로는 실제 연간 업무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월평균 근무인원, 결원 기간, 휴직·파견 및 신규채용 시기,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인력 등을 반영하여 적정인력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③ 결론

- 분쟁조정 처리건수와 조정성립 건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평균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장기사건·불성립사건이 더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양적 처리실적의 확대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성과로 충분히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처리건수 증가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처리기간, 장기사건 비율, 조정성립률 등 질적 성과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조정원은 처리단계별 지연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건 난이도를 반영한 인력배분 및 장기사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의 계획적 설정 및 산정기준 개선 필요

□ 조정원은 2025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85억 400만원 중 8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7%임.

〈2025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 예산	수정 예산 (A)	집행 (B)	잔 액 (C=A-B)	집행률 (D=B/A)
인건비	8,504	8,504	8,222	282	96.7
- 기본급	4,833	4,643	4,406	237	94.9
- 성과상여금	362	453	452	1	99.8
- 제수당	1,256	1,200	1,175	25	97.9
- 기타보수	752	782	781	1	99.9
- 사회보험부담금	695	630	619	11	98.3
- 퇴직급여충당금	606	796	789	7	99.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은 2025년 12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을 당초 3억 6,200만원에서 4억 5,300만원으로 9,100만원 증액하였으며,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과상여금 증액 재원은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제수당 및 사회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음.

〈2025년도 조정원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천원)

연도	전용일자	목	2025년 예산 [A]	전용액[B]		전용 후 예산 [A+B]	집행액
				증	감		
2025	12. 24.	퇴직급여충당금	605,560	190,000		795,560	789,024
		성과상여금	361,805	91,000		452,805	452,349
		기타보수	752,372	30,000		782,372	781,371
		기본급	4,833,357		△190,000	4,643,357	4,405,383
		제수당	1,255,487		△56,000	1,199,487	1,175,229
		사회보험부담금	695,419		△65,000	630,419	618,70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에 대해 조정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제고를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을 연말에 당초 계획보다 모든 등급에서 각 50%p씩 상향 조정하였음.

〈2025년도 조정원 성과상여금 지급률〉

〈성과평가 계획(2025. 4.)〉

구 분	S	A	B	C	D(E)
지급률(기준월봉 기준)	150%	125%	100%	75%	50%(0)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25. 12.)〉

구 분	S	A	B	C	D(E)
지급률(기준월봉 기준)	200%	175%	150%	125%	100%(0)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급기준과 소요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연말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은 예산 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⁸⁶⁾은 경영평가 성과급, 직무수행 실적 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 시 기준년도를 2024년도로 하고, 월 기본급 및 기준월봉은 별도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정원은 2025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편성 및 지급시 정부지침과 달리 2025년도 임원 연기본급 및 직원 기준월봉을 적용하고 있음.

8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의 예산 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24년도로 하며, 월 기본급·기준월봉 산출은 [붙임 1]에 따른다. [붙임 1]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급 산정기준(생략)

〈2025년도 성과상여금 산출내역 및 지급기준〉

- 예산서 기준 2025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계(단위: 천 원)
임원(성과급)	280,955,600원*×36%	101,143
직원(내부평가급)	(5,213,230,250원×1/12×60%)**	260,662
계		361,805

* 2025년도 임원 연기본급

** 2025년도 직원 기준월봉

- 성과평가 계획서 기준 성과평가 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조정원 소속 정규직 등 직원
- 평가대상 기간: 2025. 1. 1. ~ 2025. 11. 30.

- 성과급 지급계획서 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 지급 시기: 2025. 12. 31.(수)
- 지급기준
 - 임원: 연 기본급 36%(보수규정 제6조~제7조 및 2025년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정규직 직원: 기준월봉 150%(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200%)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조정원의 「보수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및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수 규정」

제6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은 기준월봉에 대하여 연간 200%, 임원은 연기본급에 대하여 연간 6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성과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및 기준 월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방법은 조정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하여 지급한다.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성과상여금은 평가기간 동안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지급액 산정기준이 지급일 현재의 보수 수준에 연동될 경우, 임금인상, 승급 등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수 변동 요인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반영될 수 있음.
- ☐ 특히 조정원의 경우 202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 평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평가기간 이후 발생한 보수 변동사항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 이는 동일한 성과평가에도 평가기간 이후의 보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 또한, 조정원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년도 및 기준월봉 산정방식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정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연말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 예산운용지침과 성과상여금 산정기준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1) 연구개발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공개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공개 비율을 높일 것	제도개선	○ 연구결과 공개 확대를 위해서 매년 비공개 건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고, 분기마다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과제를 조사하여 공개로 전환함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총건수</th><th colspan="2">연구결과 공개 건 수</th></tr><tr><th>2025년 상반기</th><th>2025년 하반기</th></tr></thead><tbody><tr><td>2020</td><td>22</td><td>10</td><td>13</td></tr><tr><td>2021</td><td>29</td><td>8</td><td>8</td></tr><tr><td>2022</td><td>31</td><td>5</td><td>7</td></tr><tr><td>2023</td><td>29</td><td>6</td><td>7</td></tr><tr><td>2024</td><td>25</td><td>4</td><td>4</td></tr></tbody></table> * 출처: ’25.12.23. 프리즘 ○ 또한, 전체 공개가 어려울 시에는 부분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3일	연도	총건수	연구결과 공개 건 수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0	22	10	13	2021	29	8	8	2022	31	5	7	2023	29	6	7	2024	25	4	4	조치완료
연도	총건수	연구결과 공개 건 수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2020	22	10	13																											
2021	29	8	8																											
2022	31	5	7																											
2023	29	6	7																											
2024	25	4	4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이행평가 결과 개선 방안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비지수기업의 협약체결 실적은 2개 기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3년 동안 이행평가 실적은 전무함 ○ [지적사항] 유통분야의 이행평가 결과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 수는 8개(33.3%)로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와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24년 12월 「협약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旣도입(’26 협약이행평가부터 적용 예정) - 아울러,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협약평가 관련 조사 항목도 추가·조사할 예정 ○ 협약이행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25.12월 「협약이행평가 기준(유통분야)」을 개정하여 업체별로 미흡한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공하는 협약평가의견서 도입 (’26 협약이행평가부터 적용 예정)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17일(가맹), 2025년 12월 11일(유통)	조치완료
(3) 자율규제 정책 시정 필요	○ [지적사항] 배달앱 업체들은 자율규제 항목을 모두 ‘이행 중’이라고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체계를 보강하고 근본적으로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독과점 행태 규율과 공정한 값을 관계를 위하여 자율규제 정책을 시정할 것	시정	○ 보다 안정적으로 플랫폼 분야의 상생안을 제도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관련 발의 법안 및 배달앱 관련 발의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별 주요 쟁점 등을 심층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플랫폼 제도 수립 노력 * (예)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협약 도입 등을 포함한 법안 및 배달앱 수수료 규율 관련 다수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플랫폼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의원실 방문설명(’25년 약 20건, ’26년 약 8건) 및 법안소위(’25년 7월, 11월, 12월 총 3차례)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논의 지원 - 한편, 배달앱 관련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향후 입법 논의 지원할 계획 ○ 조치예정일 : 2026년 연내(국회 입법논의 일정에따라 변동가능)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4)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신고포상금 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47.1%로 저조함(15억 8,500만원 불용).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사건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	주의, 제도개선	○ 직장인 사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카르텔 업무 설명회 등 전문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여 홍보 효과를 높임 ○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사건처리 총괄 부서인 조사총괄담당관실에 이관하는 직제 개정 예정 ○ 수도권 지역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설 및 필요인력 50명 증원 예정 -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본부 조사·심의 인력 또한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0일	조치완료
(5) 수탁연구사업 예산편성·집행 개선 필요	○ [지적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수탁연구는 조정원의 설립근거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가 없음에도 타 기관의 위탁용역 사업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탁연구를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행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타 기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수탁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기타 수입으로 수납하는 등 연구용역 위탁기관과의 예산 중복편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026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편성 시 사업출연금 예산에서 수탁연구비를 제외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6)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 필요	○ [지적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의 낙찰차액 2,700만원을 활용하여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 용역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사업출연금 예산사업인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일부(1월, 2월, 11월분의 용역 대금 1,920만원)를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출연금을 사업출연금 사업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행하고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은 편성 목적과 내역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모니터링을 매월 추진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7)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간담회 및 교육 실적은 8회에 불과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 및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의 활성화 및 실질적 제도 안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 횟수를 확대하고 제도 실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횟수를 확대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갖추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의 내실화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음 - 2025년 동안 찾아가는 현장홍보, 설명회, 간담회 등을 14회* 진행하였으며, 그 중 9개가 중소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소통기회를 확대하였음 * 찾아가는 현장홍보(3월~6월, 6회), 공시·연동제 설명회(6월, 12월), 전문건설협회 간담회(9월), 중기중앙회 간담회(9월), 건설 하도급현장 간담회(10월), 연동 필수기재사항 간담회(10월), 하도급법학회 학술대회(9월), 우수사례 발표회(12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4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8) 국회 결산 및 감사원 지적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에 일반용역비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시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비 예산은 지적사항에 따라 2025년부터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예산의 이·전용 문제를 해소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9) 평가의 투명성 제고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의 일부인 매우 우수사례만을 보도자료로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 소비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였음 - 또한,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향후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10)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용역비의 적정 비목으로 편성 및 불용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 용역은 일반 연구임에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였고,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 2025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편성시 연구용역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1) 소비자단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의 수의계약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7호)」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및 정보시스템 운영위탁을 각각 (사)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운영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음 -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수행 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	제도개선	○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위탁 및 정보시스템 운영위탁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의원실 방문설명을 진행중이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연내(개정안 8월중 발의 예정)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12) 연례적인 수입결손 발생 해소 필요	○ [지적사항]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2024년에도 자체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과거 수입 실적의 추이와 실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예산을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결손을 해소할 것	제도개선	○ '25년도 및 '26년도 예산(안) 상의 자체수입을 현실화하였으며, 향후로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수입 37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년도 예산안 상으로 72백만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였음 - 향후로도 연간 자체수입 실현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3) 정보화사업 집행 관련 규정 준수 필요	○ [지적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연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10억 5,800만원 중 8,800만원을 분쟁조정 사업의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 예산집행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비는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	제도개선	○ 향후 정보화 사업예산이 여타 사업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국가 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14)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사업 개선	○ [지적사항]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도 국민 밀접 이용 시설 안전 실태조사 중 위해제품 조사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품목 군에 해당하는 제품 선정 과정이 전수적 조사라기보다는 임의적 부분적 선별에 가깝고,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조치 등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보편적인 과학적 근거보다는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적 여지를 둘 수 있는 기준에 가까워 피조치 사업자의 이익 제기가 유발됐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제품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하는 한편, 조사 절차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는 확대하고, 평가 기준은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과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소비자원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시장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함에 따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있음 - 다만, 조사대상 제품·사업자 선정 시 그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보다 많은 제품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음 ○ 아울러,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의 객관성 담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업·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표 전 사업자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간담회 등도 확대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5)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지적사항]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제기되었고 그 조정 결과 환급 결정에도 일부 판매사와 결재대행사가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조정 불성립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강화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티몬·위메프(여행·항공·숙박)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피해소비자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으며, 소 제기 절차를 완료(25. 7.)하였음 -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원 하는 등 최종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음 ○ 아울러, 소송지원 확대 및 법제화 등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16) 소비자 소송지원 예산 운용 개선 필요	○ [지적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저조한 소비자 소송지원 실적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소송 지원 관련 본예산은 5,800만원, 수정예산은 4,8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감액 배분하였음 - (항)분쟁조정-(세항)피해구제 항목 안에서 소비자 상담, 소송지원, 피해구제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구조로 운영 되고 있어 예산운용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됨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불성립 소비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와 운영계획을 명확히 할 것	제도개선	○ 최근 수년간의 소송지원 신청 현황 및 피해 유형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향후 명확한 계획에 따라 소송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음 -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26년 정부예산안에 관련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원활히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7)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일반사건의 조정 불성립 건수 대비 소송지원 신청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현재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는 한국소비자원의 내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소송지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사건 종결 과정에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겠음 - 또한,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명문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18)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지침에 따라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	주의	○ 공무직 근로자 등 상용임금의 효율적 집행 및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026년 2월 11일에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함 ○ 조치예정일 : 2026년 2월 11일	조치완료
(19) 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목적의 국외 출장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성 예산을 혼합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국외업무 여비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의	○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음 - 해당 지적 사례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 등을 담당자들에게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0)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① 인지면담 과정과 ②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인지면담 과정은 일부 강사에게 수업이 집중된 측면이 있으며 교육 시기도 연말에 집중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외부전문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분야 및 강사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운영 시기 역시 분산 실시하는 등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음 - (교육분야·강사 다변화) 인지면담 분야의 비중을 줄이고 AI·플랫폼 등 기술산업 분야의 교육을 확장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연구자·법조인 등을 강사진으로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함 - (교육분산실시) 전년도에는 외부전문가 교육이 10월 이후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6월부터 7월, 10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실시함으로써 교육시기를 분산시켰음 ○ 또한, 위와 같은 시정조치가 연간 교육계획에 사전에 반영되어 교육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6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히 준비할 예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1) 취소 결정된 과징금의 조속한 환급절차 완료 필요 등	○ [지적사항]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과징금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업무도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을 초과하고 있음 - 2024년 과징금 수납액 3,016억원, 환급액 1,319억원(환급율 43.8%) - 과징금 환급에 따라 2024년 지급한 가산금 14억 7,800만원 <과징금 환급 현황> (단위: 백 만원, 건)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th>수납액(A)</th><th>환급액(B)</th><th>환급 건수</th><th>환급비율(B/A)</th></tr> </thead> <tbody> <tr> <td>2023</td><td>628,369</td><td>76,266</td><td>24</td><td>12.1%</td></tr> <tr> <td>2024</td><td>301,567</td><td>131,940</td><td>47</td><td>43.8%</td></tr> </tbody> </table> ○ [시정요구사항] 과징금 처분에 앞서 신중한 법리검토와 분석을 선행하고, 취소 결정된 과징금은 조속히 환급절차를 완료할 것	연도	수납액(A)	환급액(B)	환급 건수	환급비율(B/A)	2023	628,369	76,266	24	12.1%	2024	301,567	131,940	47	43.8%	시정	○ 취소 결정된 과징금의 환급 처리 일수 지연을 방지하고 처리 일수를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여, 8 근무일 이내에 환급하고 있음 - 2025년의 경우, 42건의 환급 건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8 근무일 이내에 환급을 완료함(환급액: 76,146 백만 원) ○ 현재 송무담당관 및 심판총괄담당관은 문서 통보 시 원사건 담당부서와 업무지원팀에 문서 통보 외 추가적인 방식(메일, 전화 등)으로 문서가 송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은 위 내용 확인 즉시 원사건 담당부서에 환급 절차 및 환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 이외에도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을 내부 시스템에 공지('24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1회, '25년 1월부터는 월 1회)하고 교육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연도	수납액(A)	환급액(B)	환급 건수	환급비율(B/A)															
2023	628,369	76,266	24	12.1%															
2024	301,567	131,940	47	43.8%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2) 변호사 선임료의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지적사항] 변호사 선임료 비용이 초과하여 배상금 및 기타 운영비 예산에서 1억 800만원을 이·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이·전용 발생) <최근 3년 변호사 선임료 예산 및 집행 현황 추이> (단위: 백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7월</th></tr> </thead> <tbody> <tr> <td>예산(집행)</td><td>2,875(2,944)</td><td>2,875(2,921)</td><td>2,875(3,003)</td><td>3,475(1,872)</td></tr> </tbody> </table> ○ [시정요구사항] 변호사 선임료 이·전용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것	구분	2022	2023	2024	2025.7월	예산(집행)	2,875(2,944)	2,875(2,921)	2,875(3,003)	3,475(1,872)	주의	○ '25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판결선고건수* 및 승소율**이 대 폭 증가하면서 예산편성된 변호사선임료가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이전용 발생 * 선고건수: 24년 154건 → 25년(1~11월) 202건(48건 증가) ** 공정위 전부승소율: 24년 82.4% → 25년(1~11월) 89.1%(6.7%p 증가) ○ 재판선고일정, 소제기건수, 승패소율 등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향후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집행하여 변호사 수입료 관련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하여 집행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구분	2022	2023	2024	2025.7월										
예산(집행)	2,875(2,944)	2,875(2,921)	2,875(3,003)	3,475(1,872)										
(23) G-클라우드 전환 사업 집행부진 유의	○ [지적사항]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후화된 대표누리집을 행정안전부 G-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하여 G-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수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와 사전 업무 협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사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상당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잔존함 * G-클라우드 전환 예산 5억 8,400만원 중 1억 5,500만원 이월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도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향후 G-클라우드 전환 사업 등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와 사업 일정 등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겠음 - 아울러, 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4)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수납률)은 연례적으로 저조함 - 2024년 과징금 체납액은 총 249건 787억 4,100만원이고, 과태료 체납액은 총 711건 19억 8,000만원임 ※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추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과태료</td><td>67.5%</td><td>52.9%</td><td>53.7%</td><td>45.3%</td></tr> <tr> <td>과징금</td><td>59.8%</td><td>55.7%</td><td>65.9%</td><td>23.1%</td></tr> <tr> <td>가산금</td><td>1.9%</td><td>6.1%</td><td>3.2%</td><td>2.7%</td></tr> </tbody> </table> ○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납된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장기간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증가하고 있음 -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과징금은 287억 5,3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36.5%를 차지하고,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과태료는 11억 7,7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체납액의 59.4%를 차지함 -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고, 과징금은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전체 미수납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징수절차 진행 등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것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과태료	67.5%	52.9%	53.7%	45.3%	과징금	59.8%	55.7%	65.9%	23.1%	가산금	1.9%	6.1%	3.2%	2.7%	제도개선	○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수납실적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 체납 현장조사 시 회사 경영상황 악화로 과징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업체는 가능한 금액 내에서 분납하도록 독려 ⇒ 2025년도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즉시 독촉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기존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등의 조치로, 미수납액 대비 임의체납 비중(19%) 및 증가분(약 11억)은 전년과 유사 ○ 앞으로도 고액 과징금 체납자 관리 및 지속적인 납부독촉·현장조사·재산조회·유관기관 협조 등을 강화하여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과태료	67.5%	52.9%	53.7%	45.3%																				
과징금	59.8%	55.7%	65.9%	23.1%																				
가산금	1.9%	6.1%	3.2%	2.7%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5)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위탁교육 대상자 2인의 경우 포렌식 부서 경력이 없었고, 훈련 후 보직 역시 디지털 포렌식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계속 배치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함양한 내부전문가가 교육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후 보직배치에 유의할 것	제도개선	○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수자를 조사 관련 부서인 기술유용조사과에 배치하였음 * 정보화담당관실 1인은 전출 ○ 조치완료일 : 2026년 3월 24일	조치완료
(26)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실효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상 분쟁조정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있어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률 제고방안과 함께 불성립 이후 후속조치 마련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것	시정	○ 공정위는 재조정 절차 의무 도입을 통한 조정 성립률 제고 방안으로 조정 불성립시 곧바로 종결처리 하지 않고 재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합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소송제기가 어려운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변호사들로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액사건, 사회적 배려계층 등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계획임 - 공익변호사(5~6명)와 MOU 체결(25. 11. 14.)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4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7) 집단분쟁조정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 신속 추진 필요	○ [지적사항]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 급증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시스템 증설공사를 위해 2025년에 3억 1,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8월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과 관련하여 다수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이용자 수와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함 -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에 노후 전산네트워크 교체 관련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을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할 것	제도개선	○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전산 장애가 빈번했던 분쟁조정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25. 12. 23.)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3일	조치완료
(28) 소비자단체 상담원 수당 정산 지연 문제 반복 발생 방지 필요	○ [지적사항]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소비자 상담건수가 급증하여 소비자단체가 지급한 상담 수당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 예산으로 사후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발생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수당 정산지연을 방지하고 차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건수의 증감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담건수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상담수당 미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7.31)
(29) 과징금 일부 패소 환급 기간단축 및 승소율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패소로 인해 과징금 수납 후 환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 일부 패소로 인해 과징금 기준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패소 시 과징금 재부과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승패소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과징금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	제도개선	○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패소로 인하여 과징금의 재부과 및 환급사유가 발생할 시, 원사건담당부서 및 업무지원팀에 신속히 통보하여 과징금 재부과 및 환급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 ○ 과징금 재산정 필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확인을 통해 재산정절차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승패소율 산정시 재산정이 진행중인 과징금액도 파악하여 함께 관리 - 사건 부서에서는 신속한 과징금 재산정 및 재부과를 위하여 매월 사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관리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